

부록 1: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성노예 범죄

여기에서는 피고들이 자행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을 일본군위안소제도의 기획과 실시,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동원, 일본군위안소로의 이송, 일본군위안소에서 범죄, 패전 직후의 범죄,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부인, 은폐, 왜곡과 축소와 관련된 범죄로 나누어 입증하고자 한다.

I. 일본군위안소제도의 기획과 실시

1. 만주사변기 일본군의 군위안소 정책

현재까지 발굴된 문서와 군인들의 회상기를 종합하면, 군위안소의 설치는 만주사변의 발발 이후가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이전 대외침략전쟁을 벌일 때에도 '위안소'가 있었다는 사실¹⁾로 보아 일본군은 군위안소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사변 이후 이어지는 15년간의 침략전쟁에서 이런 일본군의 사고방식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발휘되었다.

1932년 초의 상해사변 때 당시 일본군 병사들의 강간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염려한 상해파견군 참모부장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는 나가사키(長崎)현 지사에게 '위안부단'(慰安婦團), 즉 군 '위안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²⁾ 이와 관련한 군관계 자료에는 1932년 4월 1일자 「군오락장 취체(取締)규칙」이 실려 있다.³⁾ '접객부'는 "청도(靑島), 나가사키(長崎), 평양 등으로부터 일본·조선·중국인을 모았"다고 하며, '군오락장'이라는 시설이 4곳이 있었다고 한다.⁴⁾ 한편 오카무라는 상해에 있던 해군위안소를 모방해서 설치했다고 하며, 실제로 상해의 해군위안소는 1932년 12월말 현재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⁵⁾

여기에 이 시기에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증언⁶⁾까지 고려하면,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체계화의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안소'의 설립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혼성 제14여단의 경우가 이를 말해준다.⁷⁾

1) 1894년 청일전쟁시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군위안소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거나 1904년 러일전쟁시에 이미 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倉橋正直(1994), 『從軍慰安婦の歴史的研究』, 共榮書房, 52-54쪽. 大江志乃夫編(1988), 『兵士からの日露戦争-500通の軍事郵便から』, 朝日新書, 朝日新聞社, 349쪽 참고.

2) 稻葉正夫編(1970), 『岡村寧次大將資料』, 原書房, 302쪽. 나중에 오카무라는 '위안부'가 송출되어온 후로 강간죄가 없어졌으므로 기쁘다고 회고하고 있다.

3) 陸軍省(1937), 『滿州事變陸軍衛生史』, 第6卷. 秦郁彦(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社, 64쪽에 관련 기술이 있으며, 「군오락장 취체규칙」에 대해서는 후술함.

4) 앞의 책, 『滿州事變陸軍衛生史』, 834쪽. 앞의 책, 『慰安婦と戦場の性』, 64쪽에서 재인용.

5) 吉見義明(1992),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90쪽.

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최일례 할머니는 1932년에 만주에 끌려갔다고 한다.

7) 混成第14旅団司令部, 「昭和8年4月自11日至20日衛生業務旬報」, (財)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編

1933년 4월 16일 주둔지였던 평천(平泉)에 일본인과 조선인 창기 38명(일본인은 예기 1명과 작부 2명, 조선인은 예기 2명 작부 33명)이 와서 개업하게 됨에 따라 ‘검미(檢儆)’, 즉 위생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래 매주 1회 실시가 언급되고 있다.

위안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934년 3월의 공병 제4대대 중대장의 시찰보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⁸⁾

“위안법을 강구하는 일은 주둔부대에게 가장 긴급하다. 기껏 수비에 토벌에 중대사명을 맡치고 귀대해도 물질적 위안은 없고, 기다리는 건 폐가와 같은 낡은 병영뿐이라면 군심(軍心)은 흩어지기 쉽고 거칠어지기 쉽다.”

이런 진단은 당시 상황을 잘 말해 준다. 그리고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위안소의 전면적인 확대에 내닫게 되는 정황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2. 중일전쟁기의 군위안소 정책

1937년 7월 7일의 중일전쟁의 발발은 일본군의 군위안소 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1937년 말부터 군위안소 설립은 체계화·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군의 빈번한 중국인 부녀자 강간,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와 주둔지의 확대에 따른 ‘위안’ 수요의 확대라는 계기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군위안소의 양적인 확대는 동시에 군위안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즉 군 중앙의 정책에 의한 체계적인 지휘로 거의 대부분의 일본군 부대에 군위안소가 세워졌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강점상태에 있던 조선여성의 동원으로 ‘위안부’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1937년 12월 중지나(中支那)방면군은 예하부대에 군위안소의 설치를 지시하였고, 이를 받은 상해파견군은 참모 제2과가 안을 만들고 참모인 조 이사무(長勇)가 남경에서의 군위안소 설치에 착수했다.⁹⁾ 같은 시기에 제10군 참모 데라다 마사오(寺田雅雄)는 현병을 지휘해서 중국인 여성들을 모아 호주(湖州)에 군위안소를 설치했다.¹⁰⁾

이렇게 중일전쟁 초기부터 ‘위안소’ 설치의 단위부대 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동시에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상해파견군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1937년 12월부터 일본본토와 조선 등지에서 약 3,000명의 ‘위안부’를 조달하고자 했던 바, 그 과정에서 일본본토의 각 현에서조차 “황군의 위신을 실추”시킨다는 불만의 소리가 일었다.¹¹⁾

1938년 3월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북지(北支) 방면군 및 중지(中支) 파견군 참모장에게 “‘위안부’ 모집은 파견군에서 통제하여 인물선정을 주도적절(周到適切)하게 하고

(1998),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第四卷, 龍溪書舎. 이하 『자료집성』으로 약칭한다.

8) 工兵第4大隊中隊長(1934.3), 『北支那並滿州国視察報告』, 『자료집성』4.

9) 南京戰史編輯委員會編(1989), 『南京戰史資料集』, 皆行社, 211, 220, 280쪽. 吉見義明·林博史(1995), 『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大月書店, 16쪽에서 재인용.

10) 山崎正男 제10군 참모의 일기, 『南京戰史資料集』, 411쪽. 앞의 책, 吉見義明·林博史(1995), 『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17쪽에서 재인용.

11) Ⅲ장 3절 <군‘위안부’ 수송에 대한 국가의 관여사례>에서 상술한다.

헌병과 경찰당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할 것”을 지시한 통첩의 의도는 바로 이 폭발적인 ‘위안소’ 증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물의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¹²⁾

이리하여 위안소 설치와 운영은 점차 체계화되어 갔다. 1938년 4월의 남경에서 열린 육군, 해군, 외무의 3성 관계자 회의의 결정 사항에는 육해군에 전속된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경영·감독하므로 영사관은 관여할 바 없다고 되어 있고,¹³⁾ 같은 해 7월에 상해 총영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¹⁴⁾ 이로써 중국 각지의 점령지에 개설되는 일본군위안소는 현지 영사관 관계자도 관여할 수 없는 일본군의 관련시설 중 하나로 정의된 것이다.

한구(漢口) 점령이 임박하면서 점령지로의 일본인 출입통제를 놓고, 상해에서 군관계자와 영사관 관계자가 협의하여 1938년 9월 14일자 ‘한구 공략후 방인(邦人)진출에 대한 응급처리요강’을 결정하였다.¹⁵⁾ 이 문서는 위안소 개설을 위해 진출하는 자는 통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안소 설치가 명백히 군 작전의 일부로서 사전에 입안되었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1938년 6월 북지나방면군 참모장인 오카베 나오키(岡部直三郎)가 북중국의 각 부대에 위안소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보면, 강간사건의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성적 위안 설비를 갖추고 설비가 없어서 본의는 아니나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¹⁶⁾ 오카베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만주사변기에 이미 강간사건 방지를 위해 위안소를 설치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정황은 육군의 교육체계 내에서도 확인된다. 교육총감부에서 발행한 『전시복무제요(戰時服務提要)』 중에는, “성병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위안소의 위생시설을 완비함과 동시에 군 소정 이외의 매소부(賣笑婦), 원주민 등과의 접촉은 엄히 근절하는 것을 요한다”는 구절이 있다.¹⁷⁾ 이는 교육총감부 본부장이 초급장교 앞으로 보낸 육군의 공식적인 복무규정의 일환으로서 ‘위안소’의 존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얘기해 준다. 위안소의 적절한 운용능력 또한 일본 육군의 초급장교로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일전쟁기에 중국 전선에서 대대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경험에 입각하여, 1940년 육군성은 군기 진작을 위해 각급 부대에 발송한 책자에서는 이런 구절을 넣었다. 즉 “중국 현지에서는 특히 환경을 정리하고 위안시설에 관해 주도면밀하게 고려하여 살벌한 감정과 정욕을 완화 억제하는 일에 유의를 요한다”고 하면서, “특히 성적 위안소에서 얻는 병사의 심리적 영향은 가장 솔직 심각하므로 이의 지도 감독의 적부는 사기의 진작, 군기의 유지, 범죄 및 성병의 예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쓰고 있다.¹⁸⁾ 중

12) 陸軍省副官(1938.3.4), 「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ニ関スル件」, 『자료집성』2.

13) 「外務省警察史 在南京總領事館」, 『자료집성』1.

14) 在上海總領事發信(1938.7.5), 「昭和13年7月5日附在上海總領事發信在南京總領事宛通報要旨」.

15) 在上海總領事代理(1938.9.28), 「「漢口攻略後邦人進出ニ対スル応急處理要綱」送付ノ件」, 『자료집성』1.

16) 岡部直三郎 北支方面軍參謀長 「軍人軍隊の對住民行爲に關する注意の件」, 1938년 6월 27일.

17) 教育總監府, 『戰時服務提要』, 1938년 5월.

18) 陸軍省副官(1940. 9. 19), 「支那事變の経験より觀たる軍紀振作對策」, 『자료집성』2. 아울러 강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해 위안시설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일전쟁의 과정에서 군위안소는 일본군에게 불가결한 요소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3.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군위안소 정책

중일전쟁과는 달리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있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쟁에 돌입하였는데 이는 군위안소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실제로 동남아 지역 각지를 일본군이 점령하고 주둔할 경우 지체 없이 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

말레이 반도에서는 개전 직후인 1942년 1월 2일 제25군 병참의 장교 등이 방콕에 출장을 가서 태국인 매춘부를 모아 태국령 하자이와 싱고라에 위안소를 설치했다¹⁹⁾. 또 말라야 북부 애로스타에 들어간 병참지부는 조선인,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을 모아 위안소를 설치했는데,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 수송선으로 데려왔다고 한다²⁰⁾. 제25군이 말레이 반도를 수중에 넣은 것은 1942년 2월 15일이었으니, 전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작전'의 일환으로 병참에서 위안소 설치를 감행한 것이겠다.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군'위안소'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는 중앙부처의 일원화된 통제를 들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선박을 비롯한 동남아로의 수송수단을 전적으로 군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육군의 경우는 1942년 4월부터 육군성 인사국은상과(恩賞課)가 '위안부'의 송출과 '위안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즉 같은 해 3월 30일자로 칙령 제300호를 개정하여 '기타 후생'의 업무에 '위안소' 관계가 추가되었다.²¹⁾

육군성은 군인들의 성병 예방을 위한 '위안소' 시설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할 것을 계속 강조했다.²²⁾ 당시 육군성 의사와장 긴바라 세쓰조(金原節三)의 일지에 의하면 1942년 3월 26일 회보에는 구라모토 게이지로(倉本敬次郎) 은상과장이 국민들의 국방헌금으로 "하사관 이하에 대한 영구적 위안시설을 설치하고 싶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반년 후인 9월 3일에는 "장교 이하의 위안시설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복지 100, 중지 140, 남지 40, 남방 100, 남해 10, 사할린 10, 계 400개소"라는 기술이 있다.²³⁾ 또한 각 군위안소를 위해 체계적으로 콘돔을 보내고,²⁴⁾ '위안부' 수입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²⁵⁾

이렇게 육군성에서 군위안소의 설치에 대한 전체상을 가지고 통제하는 가운데 점령

19) 林博史의 논문, 「マレー半島の日本軍慰安婦」, 『世界』, 1993년 3월호와, 「マレー半島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について」, 『関東学院大学経済学部一般教育論集 自然・人間・社会』 제15호 (1993.7)을 참조.

20) 竹森一男(1973), 『兵士の現代史』, 時事通信社, 148~150쪽. 앞의 책, 吉見義明・林博史(1995), 『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101쪽에서 재인용.

21) 당시 은상과에 근무했던 이노우에(井上正規)의 회고담. 앞의 책 『慰安婦と戦場の性』, 105쪽에서 재인용.

22) 陸軍省副官(1942.6), 「大東亞戦争関係将兵ノ性病処置ニ関スル件」, 『자료집성』3.

23) 「金原節三業務日誌摘録」. 앞의 책 『慰安婦と戦場の性』, 105쪽에서 재인용.

24) 陸軍省経理局建築課(1942), 「陸軍密大日記」.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1993), 『季刊 戦争責任研究』 秋季号, 第1号, 25~28쪽 참조.

25) 미국 국공립문서자료, 1944~1945. 앞의 책,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34~36쪽 참조.

지 각 지역에서는 각 수준의 군대 조직에서 '위안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지나파견군을 비롯한 각급 부대에서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감독했고, 동남아의 경우는 후방의 군정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군정기관과 군부대가, 버마와 같은 전투지역에서는 군부대가 직접 '위안소'를 통제하였다. 가령 지나파견군 총사령부는 직접 나서서 콘돔의 지급방식을 변경하고자 했고,²⁶⁾ 버마 만다레이에서는 주둔지 사령관이²⁷⁾ 말레이에서는 군정감이 각각 '위안소'의 설치와 규정의 제정을 관장했다.²⁸⁾

4. 다른 일본 정부기관의 관여: 외무성, 내무성,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등

군위안소는 기본적으로 해외의 일본군 주둔지에 세워진 것이므로, 영사관 등 해외의 일본인을 관리하는 외무성의 관련부처는 '위안소'와 '위안부'의 설치 및 출입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도항과 현지에서의 활동조사와 관련된 것이다.

먼저 중국 주재 각 영사관은 외무대신에게 관할지역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직업과 출신을 조사하여, 위안소 경영자와 '위안부'를 포함하는 일본인 및 조선인, 대만인의 직업상황을 정리·보고하였다. 그리고 현지의 위안소 설치상황을 조사·보고하는 동시에, 현지 주둔군과 더불어 군위안소 통제에 일조하고 있었다.²⁹⁾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겠지만,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외무성이 도항에 관한 한 책임 있는 당국자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가령 1940년 9월 대만총독부 외사부장이 외무성 아메리카(亞米利加)국 제3과장에게, '위안소' 종업원의 도항이 시급하므로 특별히 허가해 주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³⁰⁾

내무성의 개입은 동원 및 도항의 영역에 걸쳐 있었다. 일본 각지의 경찰조직을 거느리는 관제로 '위안부' 및 위안소 업자들의 도항통제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초기에는 위안소 업자의 선정에도 관여하였다. 1938년 2월 내무성 경보국장이 '추업(醜業)'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자의 도항은 현지의 실정으로 볼 때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의 중국도항은 당분간 묵인하기로 하며, 부녀자의 모집과 주선에 대해 적정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³¹⁾ 그리고 중일전쟁 초기의 대규모 위안소 설립에 즈음하여 내무성은 업자의 선정과 부녀자의 도항에 관해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³²⁾

조선총독부의 관여도,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도항에 집중되어 있다. 1937년 8월 31일의 외무차관 통첩에 따라 동 9월 3일 경무국 보안과에서 통첩 「불량분자의 도지

26) 支那派遣軍總司令部(1942.10.3), 「昭和一七年九月副官會同席上意見, 質疑及回答」, 『자료집성』3.

27) 第5野戰輸送司令部(1943.10.3), 「第5野戰輸送司令部駐屯地業務規定」, 『자료집성』4.

28) 馬來軍政監部(1943.11.11), 「軍政規定集 第三号」, 『자료집성』3.

29) 앞의 자료, 在南京總領事館, 「在留邦人の各種營業許可及取締に關する陸海外三省關係者會同決定事項」, 1938.4.16.

30) 高雄州知事(1940.8.23), 「渡支事由證明書等/取寄不能ト認メラルル對岸地域へ/渡航者/取扱ニ關スル件」, 『자료집성』1. 이 사건의 자세한 경과는 후술한다.

31) 內務省 警報局長(1938.2.23), 「支那渡航婦女の取扱に關する件」, 『자료집성』1.

32) 자세한 내용은 III장 3절을 참조.

취체에 관한 건」을 각 도지사에게 발했다.³³⁾ 이리하여 '위안부'를 포함한 일반인으로서 중국에 도항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의 신분증명서 발급이 의무지워졌다. 조선총독부는 중국 도항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고, 당연히 '위안부'와 위안소 관계자들의 도항 상황도 숙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후술하겠지만, 1939년 3월 10일 조선총독부가 중국 한구 방면의 "군위안소가 포화상태"이기에 도항을 제한한다는 외무성의 지시를 받아 이를 각 도에 통첩하고 있어, 중국 현지와 연계하여 '위안부' 송출임무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이상의 도항 외에 '위안부'를 직접 동원하기 위해 나서는 조선총독부의 모습도 몇 개의 예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후술할 내용이지만, 1941년의 7월 소련 공격을 위해 8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는 작전계획의 일환으로, 관동군은 조선총독부에 의뢰하여 약 2만 명의 '위안부'를 동원하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다.³⁵⁾ 이러한 '위안부' 조달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산하의 일선행정기관을 총동원해서 임했을 것이다. 조선인 전 '위안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반장, 면장, 면사무소 직원 등, 총독부 관리들이 '위안부' 동원에 관여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1994년 12월 현재, 한국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전 '위안부'들 중에서, 주동원자를 밝힌 157명 중 51명 (32.4%)이 경찰 또는 관리에 의해 연행되었다고 증언했다.³⁶⁾

대만총독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자료도 눈에 띈다. 현존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 대만총독부의 역할은 대체로 도항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³⁷⁾ 그러나 앞서 언급한 1938년 11월 제21군이 계획한 위안소 설치와 관련하여 대만총독부에서 300명의 '위안부'를 모았다고 되어 있듯이 필요한 경우 '위안부'를 강제동원하는 일도 담당했다.³⁸⁾ 그 구체적인 예가 1939년 5월 중국 남부 해남도의 삼아(三亞) 방면으로 보내는 16명의 위안부단과의 관련사실이다. 대만 기소장에 언급되리라고 생각되어 조선인관련부분만 언급한다. 16명 중 조선인으로 유화연(劉化蓮: 본적: 경북 안동군)이 있었다. 이때 위안소 경영자로는 일본 구마모토(熊本) 현에 본적을 둔 葉玉友七이란 자인데, 이 삼아 방면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건축 자금 대부 등에 일본 해군(정확한 부대명은 적혀 있지 않다)과 대만총독부, 대만척식주식회사, 복대공사(福大公司) 등이 관련되어 있었다. ³⁹⁾

II.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동원

33)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高等外事月報』제1호, <宮田節子編・解説, 『高等外事月報』, 不二出版, 1988년>, 64쪽. 중국도항통제는 1937년 8월 25일자 통첩 「북지에 무직 불량분자 유입저지취체에 관한 건」이 최초이다(앞의 자료, 67쪽). 조선군 참모장과 관동군 참모장의 통보에 따라, 북중국으로 갈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했다.

34)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9.3.10), 「漢口渡航者取締ニ関スル件」, 앞의 자료, 『高等外事月報』, 71쪽.

35) 島田俊彦, 『關東軍』, 中央公論社, 1965년, 176쪽. 千田夏光, 『從軍慰安婦』, 三一書房, 1978년, 103-104쪽.

36) 후술 참조.

37) 도항 부분에서 상술함.

38) 앞의 자료, 內務省警保局長・外事課長(1938.11.4), 「支那渡航婦女ニ関スル件伺」.

39) 朱德蘭 편저(1999.7), 『臺灣慰安婦調査と研究資料集』, 中央研究院 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 51~66쪽.

1. 조선인'위안부'의 강제동원의 범죄성

(1) '강제동원'의 정의

위안부가 되는 과정을 대개 '동원' 내지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 그 정의가 현재까지 명확히 내려져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여성들이 조선의 경우 일제의 강점 하에서 자신의 자발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안부가 되어 각지로 끌려 다니면서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다면, 중국의 경우는 전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동반하여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그 전모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본군을 비롯한 당시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군위안소에서 강제로 위안부가 된 경우를 놓고 우리는 지극히 사전적인 의미로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장차 일본군성노예 제도의 체계와 실상이 자세하게 밝혀진다면 보다 엄밀하게 정의된 용어가 만들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2) 조선인'위안부'의 동원경로

천황이 임명한 조선총독은 제반 정무의 실시를 통괄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총독부 산하의 경무국은 경찰사무를 통괄하였고, 지방에서는 도지사가 도 경찰부를 통하여 경찰권을 행사하며, 각지의 경찰서를 지휘하였다. 한편 조선군사령관은 천황에 직예(直隸)하고, 군령관계는 참모총장의, 또한 군정관계는 육군대신의 지시를 받고 조선헌병대 사령관을 지휘하였다.

조선에서 '위안부'가 동원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지 부대의 필요에 따라 위안소 업자가 파견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총독부 혹은 조선군 사령부 등의 식민지 최상층 조직을 통해 '위안부' 동원이 의뢰된 경우이다.⁴⁰⁾ 전자는 많아야 수십 명 정도의 소규모일 것이며, 후자는 수백 명을 넘는 대규모의 동원일 것이다.

위안소 업자가 파견되는 경우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직접 선정되거나 또는 관련된 각 파견군이 해당 동원지역 군사령부에 요구하여 선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군 또는 재외공관(영사관)이 발행한 허가서 혹은 증명서를 휴대하고 자신의 연고지나 알고 있는 지역에 가야했다. 군이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동원업자에게 보냈다는 육군 전보(電報)⁴¹⁾의 내용은 동원과정에서의 군의 직접 개입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위안부'의 동원에 직접 관련한

40) "조선에서는 여자를 끌어모으는 데는 속임수, 공갈, 부추김의 3박자가 갖추어져 그 루우트도 정해져 있었다. 관동군에서 '여자의 공출'을 의뢰받은 조선총독부는 예사로서 도지사에 명령하고 도지사는 각 군수에 전달하고 군수는 면장에 할당하여간다. 그리하여 명령의 집행상에서 대검(帶劍)의 효과를 보이려고 각도 경찰부—각 경찰서—순사주재소 순으로 하달되어간다...이리하여 말단의 면장과 순사는 지령된 바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지껄이면서 생처녀를 모으는 것이다. 그 어구도 정해져 있었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받은 권면하고 받은 강제했다. 만일 처녀들이 이것을 피하려고 도망친다면 부담하기 힘든 가혹한 곡물공출의 할당을 주어 보복했다." 金一勉 編, 『軍隊慰安婦』, 1977, 96~87쪽 참조; 방선주, 232 재인용.

41) 季刊『戦争責任研究』秋季號 pp.34~35. 미국 국립 공문서관 자료로 '1945년 6월 4일 장가구(張家口)에서 경성으로 군은 '위안부' 수입을 위안 자금, 즉 5월 1일 하기(下記)대로 귀하에게 송금'이란 자료가 있다

이들 민간업자는 군의 지시와 권한부여에 따라 '사실상의 국가기관'(de facto State organ)에 다름 아니었고 이들의 행위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국제법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

소위 '민간업자'들은 해당 동원지에 가서 일반행정 라인, 그것도 가장 민첩하고 강제력을 갖춘 경찰 내지는 헌병 조직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인신매매조직에 가까운 대도시의 통상적인 직업소개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길이 있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서가 발행하는 도항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도 경찰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나오듯이, 조선 각지에 거미줄처럼 펼쳐진 경찰 조직은 '위안부' 대상자를 파악하고 직접 동원하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했다. 전쟁 당시 전라북도 정읍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한 일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의 정보력은 "한 눈에 주민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⁴²⁾

무한 적경리 위안소의 조선인 업자 박경도(朴景道)의 경우는 현지 경찰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이다.⁴³⁾ 새로 "위안소의 권리를 산" 그는 '위안부'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전선으로 보내졌다. 이에 박경도는 1943년 말 경, "자신의 고향에 가서 새로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여, 공무여행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조선에 가게 되었다. 고향에 간 그는 '위안부' 10명을 데려오던 도중 미군의 폭격으로 전원 사망하고 말았지만, 10명의 '위안부'는 군의 증명서, 업자의 고향이라는 연고, 그리고 현지의 경찰 내지 헌병에 의해 동원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위안부' 동원이 의뢰된 두 번째의 경우는 1941년의 '관동군특종(特種)연습(관특연)'을 계기로 관동군이 2만 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해 주도록 조선총독부에 요청한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1941년 당시 중국 관동군의 참모 하라 겐시로(原善四郎)에 의하면, 이러한 관동군의 동원계획에 따라 하라는 조선총독부에 의뢰했고,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여성 8천 명을 모아주어 중국 동북에 보냈다.⁴⁴⁾ 이러한 모집은 행정과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버마에서 미군 포로가 된 위안소 업자 기타무라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는 조선군 사령부의 요청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2명의 '위안부'를 모집하여 남방으로 갔던 것이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동원을 입증해줄 군·경찰 관계 자료는 현재 한 건도 남아있지 않아 일본이 조직적으로 폐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2) "경찰의 일은 치안유지이지만, 위생에도 매우 힘을 쏟았습니다. 전염병 예방 등입니다. 1년에 2번, 종두감염자 명부를 경찰이 만들었습니다. 그 명부의 토대가 되는 것이, 호구조사부입니다. 경찰이 한 집 한 집을 돌아다니며, 주민의 생년월일에서 성격, 가족구성, 전력,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주재소는 3명이 근무하지만, 그 중에서 2명은 매일 순찰을 돌면서, 주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동을 없었나를 조사하며 다니는 것이죠. 호구조사부만 본다면, 한 눈에 주민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西野留美子(1992),『元兵士たちの証言 従軍慰安婦』, 明石書店, 212쪽.

43) 山田清吉(1978), 『武漢兵站』, 圖書出版社, 116-118쪽.

44) 앞의 책, 千田夏光(1978), 『従軍慰安婦』, 103~104쪽.

45) 「心理戰作戰班日本人捕虜尋問報告(Japanese Prisoner of War Information Report) 49號」(1944.10.1), 『자료집성』5.

「調査報告書(Research Report) No. 120(1)」(1945.11.15), 『자료집성』5.

현병을 포함하는 조선군과 총독부가 당시 조선의 전 지역과 주민에게 끼친 영향력은 광범위하고도 막강한 것이었으므로, 조선인 '위안부'의 동원은 조선총독부의 양해와 군 혹은 현병대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인 '위안부' 동원은 조선총독부 산하의 식민통치조직이 그대로 활용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군 중앙의 '위안부' 동원에의 관여와 개입의 또 다른 예로서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오키나와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 군 '위안부'를 어떤 방식으로 동원 수송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지도)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나자 일본군은 오가사와라 병단 제109사단과 해군 지치지마(父島) 방면 특별근거지대를 지치지마 섬에 배치하였다.⁴⁶⁾ 1942년 4월 지치지마 요새사령부 참모부는 동부군 참모부와 상호 교신하며 긴밀한 연계를 통해 '위안부'를 동원하고 수송하는 과정 일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⁴⁷⁾ 그 경과는 이하와 같다.

동부군 참모부가 보낸 준비를 완료한 '위안부'를 언제 출발시키느냐 라는 전보에 대해 1942년 4월 11일 요새사령부는 설비가 완료되는 대로 보내라고 하였고, 예정은 5월 중순이라는 회신하였다. 또 3일 후의 다른 전보에서 요새사령부는 업자용 건물 완성이 5월말 예정이며, 업자의 세대수, 총인원수를 가족과 '위안부'로 구분해서 알고 싶다고 전보하였다. 이에 대해 동부군 참모부는 4월 16일 특수음식점은 15명으로 2집 예정으로 업자는 나카무라(中村)라고 회신하였다. 동년 5월 9일에 동부군 참모부는 업자가 스자키(洲崎)로부터 26명, 요시와라(吉原)로부터 15명의 여자를 준비하여 5월 15일경 선편(선명은 '芝園丸')으로 수송할 예정인데 인원수가 팬찮은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어 5월 12일 동 참모부는 여자를 스자키와 요시와라에서 각 10명, 부속인원 10명과 함께 전부 30명을 15일 출범하는 위의 배로 보내니, 도착후의 처치, 이후의 '오락장'에 관해 업자를 사령부에서 지도하라고 전보하였다.

이 사례는 일본 동부군 참모부가 '위안부' 동원업자, '위안부'의 수와 동원할 곳을 미리 선정하고 이들을 태울 배까지 확정하고 현지군은 위안소의 설치를 담당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군위안소제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사례는 또한 후방지역에까지 군위안소가 광범위하게 설치된 것을 보여주며 동원된 '위안부'의 전체적인 규모를 어렵잡는데 단서가 될 수 있다.

2. 강제동원의 방법

앞에서 살펴봤듯이 '위안부'로 동원될 수 있는 여성들을 식민지 당국이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노동력동원을 위한 각종 법령에서 여성은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위안부' 대상자를 물색하고 동원하는 데 있어, 사기, 인신매매, 강제연행 등의 폭력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남한)에서 진행하여 온 '군위안부'에 대한 증언조사 및 증언기록 자료에 입각하여 볼 때, 조선에서 '군위안부' 모집은 개인업자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이 체계적이고 대담하며 대규모로 행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간의 증언을 토대로 강제연행의 방식과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표1>은 조선인 '위안부' 동원 경위의 윤곽을 보여준다.⁴⁸⁾

46) 国書刊行会編(1978), 『写真集 日本陸海軍80年』, 国書刊行会, 405쪽, 409쪽.

47) 1942.4.11 · 14 · 16, 「父島要塞司令部參謀部陣中日誌」, 『자료집성』2.

<표1>

이름	시기	나이	지역	연행자	직업	가게된경위	도착지
박순이	1942	12	경남	일본선생권유	학생	선생의 권유	히로시마-큐슈
김은진	1944	12	대구	일본선생	학생	선생기술습득권유	일본 아오모리 현 시즈오카 현
조남례	1936	15	충남	조선인모집책	무직	취업사기	만주-싱가폴-수 라바야
하영이	1936	14	경남	일본여자	무직	일본여자가끄드김	팽호도-해남도- 싱가폴-광둥-수 마트라
김옥주	1940	17	대구	일본남자	식모살이	他家식모살이이동	중국 해남도
김은례	1942	15	평양	일본,조선남자		방직공장(정신대)	중국 남경
심달연	1939	12	경북	일본남자	무직	강제연행	대만,만주,사할린
조순덕	1940	19	함남	일본순사	무직	중국으로 돈벌러 이동중 강제연행	중국동북부, 소련 점령지역
최화선	1943	15	동경	조선남자	무직	마율이장강제연행	소련과만주사이섬
김끝순	1941	27	대구	일본인부부	무직	취업사기	인도네시아자바
황순이	1934	12	경남	일본,조선남자	무직	밥먹여준다	몽고,홍콩,싱가폴
신현순	1941	17	서울	일본,조선남자	우체국근무	간호원으로 지원	뉴기니아,버마
김유감	1944	14	경남	일본남자	무직	근로정신대	인도네시아 할마 헤라섬
김군자	1942	16	강원도	조선남자	무직	순사인아버지권유	훈춘
김소란		1926	경북	일본노부부		가족권유로돈벌러	필리핀
이남이	1942	18	경남	일본,조선남자	학생	동원	싱가폴,캄보디아 프롬펜

<표 1>은 남한과 중국(10명)에 거주하고 있거나 별세한 43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조선에서 끌려간 '군위안부'가 수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43명이란 병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3명의 증언을 통하여 연행시기, 지역, 방법 등 조선에서 '위안부' 동원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행 시기는 1934년부터 1945년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조선에서 '위안부' 연행은 1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사업이며, 일제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침략전쟁과 일치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중에서 특히 1940년대 초반에 연행시기가 집중되어 있어서 일제는 아시아 태평양전쟁 이후에 '위안부' 연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행당시 '군위안부' 여성들의 나이는 11세부터 28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연령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한 조선인 미혼녀들이면 모두 연행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1, 12, 13세와 같이 어린 소녀들까지 '군위안부'로 연행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

48) 이 표는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1992)과 『중국으로 끌려간 군위안부들』(1995)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신영숙·조혜란(1997)의 표에 증언 3집(1998)의 증언을 포함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다.

지역적으로는 조선의 전지역에서 '군위안부' 동원이 이루어졌다. 위의 표에서는 북한지역보다는 남한지역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것은 강제동원 대상자가 일차적으로 빈곤한 집의 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제 치하에서 경상남북도가 가장 빈곤했고 다음이 전라도였다. 대체로 북한 지역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나았다. 강제동원 당한 지방의 비율은 조선 남성의 경우 강제징용자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은 북한지역 조사결과를 종합한 후에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볼 때 남한지역 중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여성이 전체 여성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이것은 경상도 지역에서 '군위안부' 연행이 보다 극심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와 남도, 전라남도와 북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등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위안부' 동원이 남한의 전지역에 걸쳐서 행해진 체계적인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인 '군위안부' 동원체계가 조선총독부 산하 행정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즉 군이 조선총독부 총무국에 의뢰하면 조선총독부는 각 도에 지시하고 각 도는 각 군에 지시, 그리고 각 군은 각 면에 지시하여 면장 책임 아래 조직적인 동원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의 '군위안부' 사업은 일제의 군과 행정당국에 의한 조선에 대한 완벽한 통제, 즉 식민지 지배라는 상황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강제연행되었던 조선여성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이거나 매춘의 경험이 없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 입안한 비밀문서 '조선민족대책'(朝鮮民族對策)에 따르면 "조선의 청·장년을 일본 내지에 연행하여 탄광 및 군수공장 기타에 분산시켜 사역한다"는 조항과 함께 "조선의 미혼여자를 군대의 '특수요무(特殊要務)'에 충당한다"고 한 항목이 있다.⁴⁹⁾ 여기에서 특수요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군인에 대한 '위안행위'를 뜻한다면 조선의 경우 종래의 기생이나 '색주가(色酒家)'들이 군'위안부'로 연행되기보다 거의 남성과의 성경험이 없는 미혼여자 및 '초심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음을 잘 드러낸다.⁵⁰⁾

일본인 군의관 아소 데쓰오(麻生徹男)의 글에 의하면, 그가 검진한 조선 여성 80명과 일본 여성 20명의 군'위안부'중 일본 여성은 이미 매음업에 수년간 종사한 여성들이었지만 조선 여성은 나이도 젊고 초심자가 많아서 흥미 있는 대조였으며, 조선여성들은 중일전쟁 후 '응모'(應募)하여 '미교육 보충'(未教育補充)된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⁵¹⁾ 이는 일본인의 경우 이미 매춘업이나 접객업 등에 종사한 여성들이 군'위안부'가 된 경우가 많았으나, 특히 조선 여성의 경우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는 여성이 군'위안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증언에서 잘 드러나는 것과 같이 군'위안부'로 동원된 조선여성들은 궁극적으로 성노예에 빠지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말고도 동원과정에서 사기, 유괴·납치, 인신매매, 강간, 성폭행, 감금 등의 범죄에 희생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동원과정 중에 이루어진 범죄행위

49) 金一勉(1989), 『天皇의 軍隊와 朝鮮人慰安婦』, 三一書房, 17쪽.

50) 강만길(1997),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호칭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21쪽.

51)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on the Comfort Women Issue Republic of Korea, Military Comfort Wome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terim Report, 19992.7, 143쪽; 麻生徹男, 『花柳病積極的豫防法』, 1939. 앞의 논문, 강만길(1997), 20-21쪽에서 재인용.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행의 경위는 절대 다수가 취업을 빙자한 사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과 관(이장)을 동원한 협박이 결합된 형태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산에서 나물을 하는데 차에 실어간 경우도 있고, 기차를 타고 고향에 오는데 기차에서 강제로 연행한 경우도 있으며 인신매매도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증언집 세 권을 토대로 강제연행에서 자행된 범죄를 하나씩 지적하기로 하겠다. 아래의 동원방법의 구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강제동원의 사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불법적인 동원수단이 결합되어 있다.

(1) 사기

취업사기는 ‘군위안부’ 연행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증언 1집과 증언 2집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증언 1의 연행의 성격을 보면, 전체 21 사례에서 취업사기는 13사례로 연행방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⁵²⁾ 증언 2집에서도 13 사례 중 9명이 취업사기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⁵³⁾ 증언 3집에서 볼 때, 역시 취업사기는 전체 14 사례 중 9사례가 해당된다. 그러면,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에 조사한 ‘위안부’출신 19명의 증언에 의하면 그 중 12명이 “일본 공장에서 일할 여자들을 모집하러 온 사람에게”, “취직을 시켜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일본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오사카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일본의 군수공장에 3년 계약으로 일을 하러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밥도 많이 먹을 거고, 너희 집도 잘살게 해준다고 해서”, “일본에 있는 비단 짜는 공장에 간다고 해서”, “빨래해주고 잔심부름하면 봉급을 많이 주겠다 해서”, “돈 많이 벌고 잘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구경하는 데 간다기에”, “일본에 가서 1년 동안만 공장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기에”, “일본에 가서 일하면 돈도 벌고 정신대에도 안 나간다기에” 따라갔다가 결국 군‘위안부’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⁵⁴⁾

이 가운데 앞으로 많이 언급하게 될 피해자들의 사례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김복동: 1926년 5월 1일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처녀들을 끌고 간다는 소리에 1941년 언니들은 모두 시집을 보내고 피해자는 어려 팬찮을 것 같다고 집안 일을 돕던 중 누런 옷을 입은 일본사람이 와서 어머니에게 “데이신타이에 딸을 보내야 한다면서 군복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3년만 일하면 된다고 하여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안 갈 수가 없어 결국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다.

김군자: 1926년 3월 강원도 평창 출생. 일곱 형제의 둘째딸로 태어나 조실부모하고 철원에 있는 양부의 집에서 17세 때 전에도 한번 온 적이 있는 군복을 입은 조선남성에 의해 연행되었다고 증언한다. 심부름을 가는 줄 알고 따라나섰는데 기차, 화물차를 타는 것을 보고 심

52) 정진성, 1992: 20.

53) 정진성, 1997: 7.

5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편(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앞의 논문, 강만길(1997), 24-25쪽에서 재인용.

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 후 군인들이 타고 있던 기차를 타고 8명의 소녀와 함께 전투모를 쓴 조선인 남성에게 연행되었다고 한다.

손판임: 1924년 10월 경남 하동에서 4남 1녀로 태어나 1941년 '사토미'라는 40대 일본인 여자가 집으로 와서 좋은 직장이 있다고 딸을 보내라는 말에 따라나서 40여명이 되는 여자와 함께 부산에서 배를 타게 되었다.

김복선: 1926년 2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나 1944년 9월초쯤 아버지가 처녀를 잡아간다고 숨어있으라고 해서 일주일 가량을 숨어 있다가 어느 날 점심을 식구들이랑 먹고 있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이 와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데려갔다. 인천을 거쳐가는데 일본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인솔자들이 말했다. 오사카에서 내려 1944년 10월 초순에 '아라비라마루'를 타고 사이공을 이동하여 또다시 미얀마로 가서 랭군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일제의 통치의 결과로 빚어진 농촌 지역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소녀들을 취업 등을 미끼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한 경우 외에도 간호부로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군'위안부'로 동원한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조선인 간호부들은 중일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중국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1939년에 이미 24명의 일본적십자 조선본부 소속 간호부가 소집을 받아 북부중국의 전선으로 나간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있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고비를 맞게 되었을 때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백의천사(白衣天使)라는 미명으로 전쟁노동력으로 동원했다. 1943년의 한 신문기사는 "조선 여성들도 솔선하여 백의천사가 될 것이 요망되고 있는 이때 육군조병창(陸軍造兵廠)에서는 이들 간호부양성소 생도를 널리 모집케 되어 이 봄에 새로 학교를 나오는 젊은 여성들로서는 성직에 나가는 다시없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육군조병창 간호부양성소의 생도 모집규정에 의하면 그 자격은 만 15세로부터 16세까지-고등 여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국민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 동원계획은 곧 시행되어 조선 처녀들이 구호간호부(救護看護婦)로 선발된 기사들이 있고, 또 조선 처녀들의 지원을 독려한 기사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침략전쟁에 참전했던 어느 일본군 대위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인 '위안부'중에는 간호부의 조수를 시킨다는 말에 속았다고 한 여성이 있었다"⁵⁵⁾고 했고 또 어느 일본군 상등병은 "특수간호부 모집에 응했다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⁵⁶⁾고 증언했다. 1942년 버마의 한 조선인 '위안부'는 "부상병 위문하고 붕대 감고 장병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인 것으로 알고 왔다고 한다.⁵⁷⁾

또한 친언니와 함께 연행된 김소란의 경우, "병원에 붕대 같은 것 씻어주고 치워주

55) 西野留美子, 「慰安婦徵集에서의 强制性資料」, 8쪽

56) 같은 글, 12쪽. 야전중포병이었던 오다 기요시(小田清)의 증언에 따르면 광둥의 한 위안소의 경우 3명의 조선인 관리자가 각각 50명쯤 되는 조선인 '위안부'를 관리하였다. 이곳에서는 3명쯤 되는 조선인 남자가 각각 50명 가량 조선인 '위안부'를 관리하였다. 한 여성에게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되었을까?"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간호부 보조역'(준간호부)모집이 있어 응모했더니 위안소로 집어 넣어졌다고 했다고 한다. 니시노, 앞의 책, 1993, 55-57쪽.

57) 신영숙-조혜란, 241 이하.

고 그러면 한 달에 돈 얼마큼씩 받는단다, 한 일, 이년 벌어가 와 잘 살면 되잖아”라는 말에 ‘위안부’ 모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⁵⁸⁾ 김소란은 필리핀 마닐라 근방에 도착하여서도, “나는 병원에서 일한다니까 병원만 찾아봤어요. 그런데 큰 병원이 있더라구요. 이제 내 일할 자리구나”라고 할 정도로 강제동원의 이유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⁵⁹⁾

1941년 열 여덟의 나이로 끌려간 신현순의 경우에도, 조선사람과 함께 찾아 온 일본사람이 “간호원 시험보라고” 해서, 보국대로 가느니 간호원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⁶⁰⁾ 신현순은 배타리 가면서도, “간호원 가는 줄 알았지, 적십자기가 달려 있는 ‘헤이요마루’라는 병원선”이었다고 기억한다.⁶¹⁾ 이러한 사례들은 일제가 조직적으로 간호부라는 군대구성원의 지위를 미끼로 강제성을 은폐하고 ‘위안부’ 모집을 용이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준다.⁶²⁾ 이외에도 위문단 모집을 구실로 한 사례도 있는데 그 위문의 내용이 “야전병원에서 군인들 옷 빨아주고, 부상당한 군인치료하며 위문해주는” 일인 줄 알고 갔다가 군‘위안부’가 된 경우가 있다.⁶³⁾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전 ‘군위안부’의 대다수는 돈을 벌게 해준다는 취업사기에 속아서 ‘위안부’의 텃에 걸려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단순히 속았다기보다는, 협박과 인신매매와 같은 다른 특성이 사기와 결합되어 있다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위안부’ 모집 취업사기가 단순한 개인적 사기가 아니라 군과 관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1942년경에 연행된 김은례는 다음과 같이 연행당시를 증언한다: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순사, 이렇게 두 명이 찾아온 거야... 할머니한테 나를 ”일본에 있는 방직공장에 보내야 한다“고 통고했다는 거야. ”거기 가서 3년 만 일하면 돈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옥실이(김은례)를 어디 내보내지 말고 꼭 집에 붙어 있게 하가“ 고 하고 갔다고 하대. 만일에 ”도망가고 없으면 우리 식구 모두를 총살시킬 줄 알라“면서 무섭게 협박까지 하고 갔대요. 그러니 어떡해?... 나도 이국 땅에 혼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지,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 내가 안 가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인다는데⁶⁴⁾

여기에서 취업사기는 단순한 사기라기보다는 힘에 의해 가해진 협박과 결합되어 있

58) (1999:49)

59) (1999:51)

60) (1999:295)

61) (1999:296)

62) 취업사기로 인한 동원과 관련하여 ‘정신대’로 동원된 사람들이 군‘위안부’가 되었는지는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록한 피해자의 증언 가운데에는 이런 유형은 발견되지 않고 최명순의 경우와 같이 “정신대 안 가게 해주마”라고 했다가 ‘위안부’로 데리고 간 사례, 근로정신대로 갔다가 그곳을 탈출하여 도피하던 중 납치되어 위안부가 돼야했던 경우가 있을 뿐이다. 신영숙·조혜란, 243. 또한 근로정신대로 소집되어 갔다가 굶주림을 못 이겨 도망했으나 결국 잡혀서 군‘위안부’가 된 경우도 있다(강덕경의 경우).

63) 신영숙·조혜란, 241 이하.

64) (1999:123-124).

다. 다시 말해, 가족들과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목숨을 없앨 수도 있는’ 권력에 의해 끌려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위안부’ 동원에서 그렇게 만연한 취업사기는 일제에 의한 무력통치 속에서 가능한 제도적 범죄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의 예는 가난한 가정의 출신인 자신이 부유한 가정의 딸로서 대신 연행되었던 경우를 보여준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열다섯 살 때, 먼 친척집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던 최화선(가명)에게 동네 이장이 접근하였다. 이장은 “너 공장에 가면 이제 참 좋다. 이 집 저 집 땀기면서 사는 것보다 공장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좋은 데로 보낸다”고 하여서 그 길로 끌려가게 된다. 이장이 태우는 차를 타고 대구까지 와 보니 이장이 잘 아는 “번화하게 사는 집”에 당도한다. 그 집 엄마는 이 할머니에게 “오늘부터 너는 최화선으로 있어야 한다. 그 딸 대신 보낸다”고 그래, 그 집 넷째 딸이 최화선이라, 그 딸이 내 또래였어”라고 술회한다.⁶⁵⁾ 이후 할머니는 ‘최화선’으로서 갖은 고초를 다 당하게 된다. 이러한 증언은 ‘위안부’ 동원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적 할당과 같은 조직적 집행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재검토 요). 취업사기는 그러한 조직적 배분이 집행되는 표피적 수단이었을 뿐이다.

다른 한편 표면적으로는 취업사기인데 그 내면에는 위에서 살펴본 조직적 배분과 인신매매 수법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사람 집에서 식모노릇을 하던 열 일곱 살이었던 김옥주에게 하루는 그 집 주인인 일본군인 마쓰모도가 “인천으로 일하러 가겠느냐”고 권유하였다고 한다. 당시 김옥주는 한 달에 2원을 받고 있었는데, 8원씩 주는 데를 소개받으면서 세 달치 월급 24원을 선불로 받게 된다. “집에 이십 원 주고 어머에게 줬지, 나는 사원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놈 가지고 옷도 해 입고.”⁶⁶⁾ 그리고 나서 “마쓰모도는 일본 남자 둘에게 날 넘겼어. 한 사람에게 히라키상, 히라키상 그러더라고... 히라키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고.” 할머니는 “내중에 알고 보니 마쓰모도는 알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속인 게지”라고 증언한다.⁶⁷⁾ 이렇게 김옥주가 받은 선불로 미루어 보아 김옥주를 대상으로 돈이 이미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인 쇼조(특무상사)였던 집주인의 취업사기는 김옥주에 대한 인신매매와 동시에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신매매는 고위 군인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조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연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군위안부’ 취업사기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증언에서 볼 때, ‘군위안부’의 동원은 군, 경찰, 행정조직 관계인물과 같이 민간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다. <표 1>에서도, 일본군인, 군복 입은 사람, 마을 반장, 군인, 순사, 정내회 남자, 군인 등이 연행자로 기억되고 있다. 증언 3집에서 볼 경우에도, 군복 입은 사람(이남이), 군복입은 한국남자(김군자), 일본인과 조선인 순사들(김옥주), 일본인 순사(조순덕), 이장(최화선), 일본인 시청직원(김유감)과 같이 군과 관, 공무원이 ‘위안부’ 징집에 직접 활동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증언집 1집에도 나타나서 전체 21사례 중 관, 군인, 군속에 의한 연행이 13사례에 달하고 있다.⁶⁸⁾ 이것으로 볼 때 취업사기를 ‘개인업자’의 소행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더 나아가 취업사기를 개개인의 취업사기

65) (1999:194)

66) (1999:95)

67) (1999:96)

68) (정진성, 1992:20)

로 개념화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거짓정보, 정보부재, 정보은폐라는 상황이다. 즉 자신이 취업할 장소, 조건, 책임자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또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또한 그러한 사기가 10여 년 동안 수만을 헤아리는 어린 여성들에게 자행되었는데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은폐되고 조장되었다. 따라서 이 '취업사기'를 취업사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폐한 조선의 경제상황, 둘째, 징병 징용과 같이 전시동원체제라는 맥락, 셋째 당시의 군과 행정기구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적극적 지원. 요컨대, 이상의 취업사기는 식민지 전시 상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행해진 취업을 가장한 강제동원의 성격을 보여준다.

(2) 납치

납치란 취업사기와 같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경우를 말한다. 사기와 기만을 통해 교묘하게 시작된 조선여성들에 대한 징집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전쟁터에서 성노예들에 대한 요구가 커갈수록 노골적이고 공격적이 되었다. 납치에 참여했던 전 일본장교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노예사냥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은 조선여성들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얀마의 시골마을에서도 여성들을 붙잡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군이 민간인 역류시설에서 몇 명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납치한 바 있다.

이제까지의 증언에서 볼 때 납치, 유괴와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어 강제동원된 경우가 취업사기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연행방식이었다. <표1>에서 보면, 전체 43사례 중 6-7사례가 납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 예인 심달연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심달연은 연행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때 내가 열 두살 먹었던가 열 세살 먹었던가 그 정도 됐지 싶다. 우리고 농사 조금 지었는데, 일본사람들이 나와서 설치고 다니면서 다 뺏어가예. 그래가 목을 개 하나도 없다카이, 그래가 언니하고 들어서 나물캐러 나갔다가카이... 그걸 뜯고 있는데 차가 오디만은, 모자 쓰고 커다꿈한(커다란) 사람들이 두어 명 내리데, 내려서 쫓아오디마는 우리 광주리를 툅툅 차뿌리는 기라. 그라디만 차를 타라꼬 그라는 기라. 그래 돌이 고만 끝안았어예. 그때 들에 딴 사람은 없었어예. 그라더니만 나를 발로 차버리고 우리 언니를 머리꺼디(머리채)를 이래 쥐고는 차에 꼬잡아 었데. ”언니야” 하고 내가 막 울면서 그카니까 쫓아오디만 내조차도 좇아 올리버리데.”⁶⁹⁾

심달연 할머니는 차에 타고 보니 “6학년 아이들 학교서 나오는 거를 마카(전부) 차에 조 실어서 데코갔”다고 한다. “막 아이들이 죽기살기로 우니까. 구둣발로 디리차뿌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울리(울려)요. 구둣발에 거 한 번 채이면 얼마나 아를지요 말도 모(못) 해요. 그거를 그래 맞고도요. 아아들 살점이라서 견디지, 요새 걸으마 골병이 들어가 못 살구마.”⁷⁰⁾ 이렇게 심달연의 연행과정은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심달연 할머니가

69) (1999: 146)

당한 고초를 예견하게 한다.

작년에 타계한 조순덕의 경우도 강압적 납치로 '군위안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순덕은 다음과 같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19살 가을이예요. 서울에 사는 친언니 집에서 [고향인] 함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기차타고 가다가 순사에게 잡혀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보부 계통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 것 한 번만 당한 것은 아니예요. 그 전에 기차 타고 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기차가 원산 도착했을 때 일본인 순사가 날 조사하고 에세이다이인가 헤세이다이인가⁷¹⁾ 그런데 가면 일하고 돈도 준다고 해요. 나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집에 연락해 준다면 집에 연락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돈 준다고 해도 강압적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예요. 두 사람. 세 사람.”⁷²⁾

취업사기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위안부' 동원을 지원하는 사회체제의 성격이 이러한 '납치'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식민지 군부 통제는 '나물캐는 소녀'에게나 '기차여행을 하는 아가씨'에게나 누구에도 뻔칠 수 있고 그것에 항의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강요의 정도는 다르지만 황순이의 경우는, 열 세 살에 “친구 셋이서 나물 캐러 갔는데 일본 남자하고 한국 남자 하나가 쪼그만 도라크 차에서 내려 과자를 주면서 “따라가면 하얀 쌀밥에 고기반찬 해주고, 뭐 과자도 주고 옷도 좋은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따라간 경우도 나타난다.⁷³⁾ 이러한 연행방식에는 위의 경우들처럼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지만, 거짓 유혹을 통한 연행이라는 점에서 납치와 연속선상에 있다.

다른 한편, 김유감 할머니의 경우에서처럼, 관(시청사람)의 압력에 못 이겨 '정신대'로 동원된 경우도 있다. “이제 정신대는 안 가겠지 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정신대] 2차 뽑는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시청에 가서서 싸우고 이랬다구. 우리 딸 안 보낼끼라고, 가만 안 있겠다고... 시청 사람이 일본에 가면 잘해주고 참 좋다고 그러더라. 옷도 내주고, 땃도 주고 그런다고 꼬여서 간 기라.”⁷⁴⁾ 이 경우에는 정신대라는 동원목적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신대 동원을 피하다가 계속적인 강압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 점에서 이 경우는 관의 압력과 정보 은폐가 결합된 납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납치는 '사냥'과 같이 원색적인 폭력에서부터 사기 협박, 유혹이 결합된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취업사기, 인신매매와 납치는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식민지 무단통치와 전시하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이라는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3) 인신매매

70) (1999:147)

71) '데이신타이'라는 정신대의 일본발음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72) (1999:172)

73) (1999: 222)

74) (1999:321)

‘군위안부’ 동원시에 만연한 취업사기의 이면에는 인신매매의 행위가 존재한다. 한편 취업사기를 동반하지 않은 인신매매도 나타난다. 일본에 있는 언니의 집에서 조카를 보아주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하던 하영이(가명) 할머니가 그 경우이다. 하영이가 열 다섯 살 되던 1936년경, 이웃의 한국인 아줌마는 “내가 한국에 데려다 줄게, 나도 한국에 나간다”고 하면서 2, 3일 후에 어디로 나오라고 했다. 배 타는 곳으로 나를 데려온 아줌마는 그곳에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다. 인계받은 아줌마는 일본인이었다.... 그 곳에서 큰 연락선을 탔는데 배 안에는 나만한 여자애들이 십여 명 더 있었다.... 그 후 안 일이지만 그 여인이 대만까지 날 데려가 그곳에다 나를 팔아먹은 것이다“라고 술회한다.⁷⁵⁾

이외에도 취업사기와 병행하지 않은 인신매매는 아버지, 남편과 같은 가족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가 나타난다. 날마다 술에 파묻혀 사는 아버지를 두었다는 조남례 할머니는 “아버지는 이웃에 살던 한국인 남자에게 돈을 받고 나를 팔아 넘겼다. 아버지는 돈밖에 몰랐다”고 증언한다.⁷⁶⁾ 하지만, 이러한 인신매매를 단순히 ‘하층가족’에서 일어난 가족의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족 인신매매의 배경에는 위에서 지적한 조선사회 전반의 피폐한 경제생활, 또 경제적 피폐와 함께 한 도덕적 붕괴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딸, 부인에 대한 여성천시 현상 또한 이러한 인신매매의 중요한 맥락이 된다. 유독 가족에 의해 행해진 인신매매만이 인신매매로 두드러질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인신매매가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앞에서 본 취업사기나 납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사기, 납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사기의 경우에는 식민지 국가의 유도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되었다. 다시 말해 인신매매의 중심적 주체는 가족원이나 개인이 아니라 식민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종종 대규모 인신매매단이 연루되어있었다. 일본이 도발한 중일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군‘위안부’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조선에서도 대규모의 처녀유괴단이 생겨났다. 1939년의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농촌의 무지한 처녀 65명을 유인하여 창기로 팔아먹은 처녀유괴범 부부가 붙잡혔다. 이들은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무지하고 도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농촌 처녀들을 유괴하여 중국의 북경·천진·목단강·상해 등지에 700원부터 1,000원까지 받고 창기로 팔아먹었다. 유괴범들은 16세 정도의 소녀들을 상대로 서울 가서 좋은 직업을 알선하겠다고 속여서 팔아먹는 방법을 썼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유괴당한 처녀는 65명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각 유곽에 팔아넘긴 수만 50여명에 이르고 기타 천진·상해 방면으로 중국인에게 팔아넘긴 경우가 20여 명 등 약 150명이나 되었으며 앞으로 취조에 따라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일제치하에 황폐될 대로 황폐된 조선 농촌에서 중일전쟁의 확대로 그 수요가 급증한 일본군 ‘위안부’의 자원이 양산되고 있었으며 그 조달방법의 하나로 조선의 가난한 농촌 소녀들을 대규모로 유괴하여 중국 등지로 팔아넘기는 방법이 성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다.⁷⁷⁾ 또한 이 유괴단들에 의

75) (1999: 278)

76) (1999:265)

77) 앞의 논문, 강만길(1997), 21-22쪽. “같은 무렵 적발된 또 다른 대규모 소녀유괴사건을 보자. 서울에 사는 배명준(裴明俊)부자와 조카 등이 4년 전부터 북선(北鮮)지방 각 농촌을 돌아다니며 17~18세 소녀를 전문으로 100여 명 유인해다가 북중국 지방과 만주 등지에 팔았다. 이들은 농촌으로 다니면서 가난한 김 딸들을 부유한 김의 수양녀로 알선한다 하여 1년이상 서울에 데려다 두고 부모

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 여성의 대부분은 10대 미혼녀들이었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인신매매조직의 활동을 진압한 사례도 있었으나⁷⁸⁾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기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유괴단은 유괴한 소녀들을 일단 서울 시내의 유곽에 팔았다가 가족이나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시 중국 등지의 위안소로 전매(轉賣)하는 방법을 썼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의 반월루(半月樓)·유명루(遊明樓) 등 유곽에 팔려갔던 40여 명의 피해자 중 다른 곳으로 전매된 것이 판명된 경우만도 20세의 조(趙)모를 산동성 담경(沓鏡)위안소에 500원에 판 것을 비롯하여 12명이나 되었다.⁷⁹⁾ 이 사례는 조선에 옮겨진 일본식 유곽이 농촌 소녀들을 유괴한 다음 중일전쟁으로 중국에 설치된 일본군위안소로 전매하는 중간 연결소의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매는 일본관헌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본이 이러한 범죄를 진압하기보다는 방조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당시 조선에서 횡행한 부녀유괴조직과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와의 통모(通謀)를 시사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는 시골 처녀와 유부녀들을 피어 부산으로 데려와서 부산부 호적계와 대서업, 소개소 등과 연락하여 호적등본을 위조해 가지고 만주·북중국·남양 방면에 팔아 먹은 경우를 들 수 있다.⁸⁰⁾

일본은 무엇보다 이와 같이 전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괴조직들의 범죄활동을 통하여 조달된 조선의 여성과 소녀들을 중국 등지의 군 '위안부'수요에 충당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농촌 소녀들을 그들의 가난한 처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미리 주고 사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인신매매에 의한 동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군 '위안부'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매매한 경우는 없었고 부상병 간호 등 다른 업무를 내세운 사기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버마로 갈 '위안부'의 동원사례는 이러한 유형을 잘 보여준다.⁸¹⁾ 1942년 5월 초순 동남아시아에서의 '위안 서비스', 즉 병원에 수용된 상병(傷兵)들을 방문하는 것에 관련된 일들, 예를 들면 봉대를 감아준다는 등을 언급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했다. 많은 돈, 가족의 부채 해결, 쉬운 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새 생활에의 전망 등도 제시했다. 이러한

들을 안심시킨 후 백지위임장을 받아 중국 등지로 팔아넘기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순진한 농촌 처녀 100여 명 유인 매각(誘引賣契)', 『매일신보』 1939.3.28) " 앞의 논문, 강만길(1997), 22쪽.

78) "가족 친척 등으로 구성된 유괴단은 지방조직도 가지고 있었다. 논산 지방의 경우 6명의 조직원을 두고 서울에 수양녀로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소녀들을 유인하여 먼저 폭행한 후 중국 지역으로 팔았는데 그 수가 150여 명이나 되었다. 경찰이 그들의 집을 수색했을 때도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소녀 10명이 있었다."('회생된 처녀 150, 논산 지방서 연루자 6명 검거', 『매일신보』 1939.4.1) " 앞의 논문, 강만길(1997), 22쪽.

79) '악랄한 유곽업자 속속 외국으로 전매(轉賣)-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매일신보』 1939.3.9, 앞의 논문, 강만길(1997), 22쪽에서 재인용.

80) "관계자 80여 명의 대규모 부녀유괴단", 『매일신보』 1939.11.22, 앞의 논문, 강만길(1997), 23쪽에서 재인용.

81) 앞의 자료, 「心理戰作戰班日本人捕虜尋問報告(Japanese Prisoner of War Information Report) 49號」(1944.10.1). 앞의 자료, 「調査報告書(Research Report) No. 120(1)」(1945.11.15).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거짓에 현혹되어 많은 여성들이 해외 모집에 응했고 기백 원의 착수금을 받았다. 이렇게 인신매매된 여성 대다수는 무지하고 교육 못 받은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전도금에 따라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업자주인’을 위하여 일하게끔 되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매춘 경험이 없는 조선의 젊은 여성들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미리 받고, 상이군인 간호 등의 감언에 속아서 미얀마 전선에까지 끌려가 군’위안부’가 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실제 채무에 의해 성노예의 처지에 빠졌던 것으로 ‘채무노예(debt bondage)’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4) 강간, 상해

강제동원 과정에서부터 일본군이나 업자에 의해 강간, 윤간이 자행된 경우가 많다. 또한 상해의 경우도 볼 수 있다. [증언 보충]

(5) 기타 범죄: 다diaspora(diaspora), 가족파괴

이상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볼 때 조선인 여성의 ‘군위안부’ 동원은 강제연행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것을 위하여 사용한 수단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뿐 그 본질은 일본 식민주의 권력에 입각한 식민지 여성에 대한 강제동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강제동원은 대상이 되었던 여성에게는 자신의 고향과 나라로부터 원하지 않는 이탈, 즉 다diaspora라는 또 다른 커다란 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끌려간 여성들의 가족에게는 가족파괴와 같은 현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강제동원이 식민지 시기의 한국인에게 가져온 깊고 장기적인 피해의 지점이라고 하겠다.

증언 1,2,3집 참고로 할 때, 한국인 ‘군위안부’ 여성들은 부산으로 끌려간 윤두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이 아닌 외국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 여성이 연행된 장소는 일본, 대만, 사할린, 중국, 캄보디아, 태국, 버마,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팔라우, 트럭섬, 사이판, 괌, 파라오, 파푸아뉴기니아와 같은 태평양 도서지역 등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실로 “일본군이 싸운 곳이면 어디든지 ‘위안부 소녀들’이 있었다”는 보고를 실감케 한다.⁸²⁾ 이것이 이들 여성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고향과 땅이라는 근거지로부터의 ‘뿌리뽑힘’이고 추방이다. 이 결과 많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장소의 물정을 전혀 몰라 도주의 의미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1945년 일본의 패전시에도 한국에 귀국할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하게 된다. 여기서, 패전 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 남아서 살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1996년 캄보디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이남희(훈할머니, 증언 3집 참조)와 현재까지 중국에 잔류하고 있는 한국인 전 ‘군위안부’들의 존재가 이런 유추를 입증하여 준다. 이들 생존자들은 한국에 돌아오기를 희망하여도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그 나라에 근거지를 두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위안부’ 강제동원이 그들 여성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남희 (훈할머니)를 면접하였던 정리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82) Psychological Warfare Team, *United States offices of War Information*, 1944 참조.

“고향에 대한 불분명한 기억, 무엇보다도 자신이 철이 들어서까지 사용했던 말과 자신의 이름까지 모두 잊어버린 할머니의 모습 그 자체가 군‘위안부’ 정책의 만행을 충분히 고발하고 있다.”⁸³⁾

1945년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의 경우에도 대다수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찾아간다고 해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한다. 그것은 자신의 ‘군위안부’ 경험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성규범 때문이었고, 자신이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가족의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⁸⁴⁾ 요컨대 ‘위안부’ 경험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 이것은 생존자 ‘위안부’들에게 의지하고 교류할 집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의 사회적 소외 문제와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부’들의 경우,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가족이 징병 징용 등으로 납치되고 사망하며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가족 해체를 경험한다. 언니 하나에 남동생 셋이 있었던 김끝순(가명) 할머니 가족의 경우가 그 중의 한 예이다.

“동생 들은 저 만주로 뛴신 공장으로 징용 가고 했지만도 하나 데리고 사는데도 못 하겠습디더, 동생들은 다 죽었지예. 그때 징용 가서 죽고 일본군에서 죽고 다 안 죽었습니꺼. 동생 서이 다 죽었어예. 다 죽고 인제 내 하나 남았다 카니꺼네. 언니도 그 때 일본서 나와서 계속 한국에 있다가 죽었어예.”⁸⁵⁾

이외에도 ‘군위안부’를 두었던 가족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함께 안고서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예를 볼 수 있다.⁸⁶⁾ 이상과 같은 군‘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범죄가 단지 당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안부’ 여성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주위의 사람에까지 끼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안부’의 모집은 일본군부와 행정조직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거나 군당국의 요청에 받은 위안소 운영자들의 부탁으로 민간알선업자, 즉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사기와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군‘위안부’의 동원에 있어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으나 그 경우도 감언·강압에 의거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또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음이 명백해졌다.……전쟁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서 그 모집·이송·관리 등도 감언·강압에 의거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되었다”고 했다.⁸⁷⁾

83) (1999: 41)

84) (증언 1,2,3집 참조)

85) (1999: 243-244)

86) 김소란의 경우,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1999:62-63), 심달연의 경우에도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경험을 하였다(1999:168 참조).

87)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1993),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内閣官房長官談話」, 『資料調査』

그러나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1996년 보고서(par. 지적하고 있듯이 자료의 부족으로 '위안부'의 모집과정에 관한 진상을 밝히는데 어려 으며 특별보고관 또한 관계 정부에 모든 현존서류와 진상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 있으나 여전히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관여인정은 법적 책임을 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⁸⁸⁾

피고인들(이름 특정)은 군인 또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혹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사 실상의 국가기관으로서 다수의 조선여성들을 사기, 납치, 인신매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군 '위안부'를 불법적으로 강제동원하도록 명령, 선동, 고무하거나 직접 강제동원행위에 참가 또 는 방조하여 위안소에서 뒤에 별도로 기소된 바와 같이 성폭행, 강간, 고문, 감금,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상해, 살인 등의 범죄행위의 피해를 입게 하여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dias포라와 가족파괴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인권침해를 당하 도록 한 것에 대하여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헌장 제2조 1항에 적시된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III.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이송

1. 도항에 대한 일본의 국가통제체제의 확립

중일전쟁 발발 이전에는 중국으로 도항하기 위해 여권이 필요하지 않았다. 즉 '자유 도항'이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그 변화 는 1937년 8월 31일의 외무차관 통첩 '불량분자의 도지(渡支) 취체에 관한 건'이 계기가 되 었다.⁸⁹⁾ 이 통첩에 따라 '위안부'를 포함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이 본인 의 신분, 직업, 도항목적, 요건, 기한 등을 조사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출 발항 관할 경찰서장은 신분증명서 또는 정식여권 소지자에 한해 승선을 허용했다. 이로써 형식적으로는 경찰서, 즉 국가의 허가가 없이는 중국으로의 도항이 불가능해졌으며, 동시에 모든 중국 도항자는 국가가 파악하고 있었으며 또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되었 다.

외무차관의 명의로 발해진 통첩에는 먼저 외무성의 입장이 투영되고 있다. 중국에 주재했던 영사관에는 경찰서의 간판을 단 영사경찰이 있어, 재류 일본인의 등록과 보호취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⁹⁰⁾. 따라서 중일전쟁 발발 이전부터 조선인을 포함한 재류 '일본인'의 신원은 영사관에서 파악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당연히 직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 다⁹¹⁾. 이로 인해 현지 영사관은 당연히 위안소의 개설을 위한 '위안부'의 도항과정에 개입해

第1次発表」.

88) 후술 제2부 참조.

89) 外務次官(1937.8.31), 「不良分子ノ渡支取締方ニ關スル件」, 『자료집성』1.

90) 百瀬孝(1990), 『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 吉川構文館, 161쪽. 1943년 시점에서 2,968명의 경찰관이 있었다고 한다.

91) 중일전쟁 발발 이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료집성』2에는 아래의 자료 3점 이 실려 있다.

在上海總領事館警察署長(1935), 「昭和一〇年在上海總領事館警察事務狀況<同警察署長報告摘錄>」

한편, 1938년 3월 1일 '제남(濟南)행 여객의 제한 철폐에 관한 건'¹⁰⁶⁾이라는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도항통제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화북지방에 사무관을 파견하여 '위안부'의 도항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1937년 12월 초순부터 제남 방면의 여행을 금지시켰던 일본군은 다음해 1월 14일부터 2월말까지 일반 여객의 여행을 허가했다. 이는 특무기관의 엄중한 신원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천진 영사관에 주재하던 제남 영사관의 파견원이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앞서의 외무차관 통첩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다. 허가증 발급자의 구성은 일본인 731명(여자 173명), 조선인 176명(여자 115명)으로, 일본인 여자 중 '예기·여급'은 76명이고, 조선인 여자 중 작부·여급은 101명이며, 101명 중 '9할은 작부'로 "직업별로 볼 때 특수부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위안부'의 이동상황을 면밀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후 1938년 12월 7일 '한구 및 광둥 방면 도항자의 통제에 관한 건', 1939년 2월 6일 '방인의 한구 도항에 관한 건', 동 3월 10일 '한구 도항자 취체에 관한 건' 등의 3건의 통첩이 각도 경찰부장 앞으로 보내졌다.¹⁰⁷⁾ 특히 3월 10일자 통첩은 한구 쪽의 "군위안소가 포화상태"이므로 도항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미 2월 20일 척무성(拓務省) 조선부장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가 조선총독부 외무부장 마쓰자와 다쓰오(松澤龍雄)에게 보낸 '한구로의 도항자취체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받아, 3월 3일 조선총독부 외무부장이 경무국장에게 조치를 해줄 것을 요망하여, 각도 경찰부장에게 하달된 것이다. 이로써 식민지 당국자는 중국 현지의 영사관→외무성 본성→척무성 조선부→조선총독부 외무부(경무국)→각 경찰관서의 경로를 통해 '위안부' 도항을 통제·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앞에서 1940년 5월 7일의 각의결정에 따른 중국도항의 통제는 조선에서도 5월 20일부터 적용되었다¹⁰⁸⁾. '위안부' 도항의 경우, 중국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지사 유증명서'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조선총독부가 '위안부'의 도항에 어떻게 관여했는가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남방으로의 도항을 육해군이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조선인 '위안부'의 현지 수송은 여전히 일본정부와 식민지 당국의 책임하에 철저하게 관리·통제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군 '위안부' 수송과 위안소 설치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상해파견군 육군위안소의 설치과정

1937년 12월에서 1938년 2월에 걸친 상해파견군 육군위안소의 설치과정을 보면 이러한 통첩이 가지는 실제적 의미를 알 수 있다.¹⁰⁹⁾

106) 北支派遣事務官宮田寅雄(1938.3.1), 「濟南旅行客ノ制限撤廃ニ関スル件」, 한국정부기록보존소 소장(전쟁 11).

107)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8.12.7), 「漢口及廣東方面渡航者ノ統制ニ関スル件」, 동(1939.2.6), 「邦人ノ漢口渡航ニ関スル件」, 동(1939.3.10), 「漢口渡航者取締ニ関スル件」, 앞의 자료, 『高等外事月報』, 70~71쪽.

108) 앞의 자료, 『高等外事月報』제13호, 35~42쪽.

109) 『자료집성』 제1권에 아래의 관련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먼저 1937년 12월 전후, 보다 정확하게는 12월 21일 이전, 상해영사관에서 영사관 관계자, 영사관 육군무관실, 그리고 헌병대가 협의하여 군위안소 설치를 합의했다. 업무 분장을 보면, 영사관은 영업신청 제출자에 대한 가부의 결정, '위안부'의 신원과 일반적 계약절차, 도항상의 편의 제공, 영업주 및 '위안부'의 신원과 기타사항에 관한 관계 부서간의 조회 및 회답, 도착과 동시에 상해에 체재하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영업 및 취업의 가부를 결정하여 헌병대에 인계한다. 헌병대는 영사관에서 인계 받은 영업주와 '위안부'를 취업지로 수송하는 절차와 이들에 대한 보호 취재를 담당한다. 그리고 무관실은 취업장소 및 가옥 등을 준비하고, 일반 보건 및 성병검사에 대한 건을 맡는다.

상해영사관은 '위안부'('稼業'부녀)를 모집하기 위해 일본 본토와 조선 방면에 여행하려는 모집인들에게 사유를 기입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인에게 휴대하게 하고 이들에게 승선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영업에 필요한 서류로서는 본인 사진 2매가 첨부된 임시작부영업 허가원 1인당 1통, 승낙서,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작부 가업자에 대한 조사서 등이다.

모집인의 진술에 따르면 상해파견군 육군위안소는 전체 약 3,00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1938년 1월 현재 약 2,300명이 가업중이며, 이 중 70명은 38년 1월 3일 나가사키(長崎) 항에서 헌병호위 하에 육군 수송선('御用船')으로 수송되었고, 4-50명은 동 8일 고베(神戸) 항에서 임시선 단고마루(丹後丸)로 수송되었고, 동 26일에는 역시 고베 발 군용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모집조건을 보면, 2년 기한이며 2년 후 군대와 함께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령은 16세에서 30세까지이며, 전차금(前借金)은 500엔에서 1,000엔까지로 전차금의 2할을 공제하여 모집인의 준비금으로 충당한다. "정교금(情交金)", 즉 화대는 장교 5엔, 병사 2엔으로 정해져 있다.

연락 계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외무성 채널의 경우, 상해영사관 경찰서장이 직접 나가사키(長崎) 현의 '나가사키 수상(水上)'경찰서장에게 1937년 12월 21일자로 '위안부' 모집에 대한 협조공문을 띄우고 있다. 그리고 외무성 채널인지 육군성 채널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내무성에도 '위안부'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전달되어 내무성 경무국이 관계 각 지방장관 및 경찰서에 지시를 내리고 있다. '효고(兵庫) 현과 관서 지방에서는 현 당국도 양해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업자의 진술이 있으며, 효고 현의 경찰부장은 내무성 경무과장에게서 연락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오사카(大阪)의 구조(九條)경찰서의 경우에는 내무성에서 "비공식적으로" 오사카 부(府) 경찰부장에게 의뢰한 것에 따라 '위안부' 모집에 협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군마(群馬, 1938.1.19), 고치(高知, 1938.1.25), 야마가타(山形, 1938.1.25), 와카야마(和歌山, 1938.2.7), 이바라키(茨城, 1938.2.14), 미야기(宮城, 1938.2.15) 등 6개 현에는 내무성으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이는 모집업자들은 내무성의 통보와 지시가 가지 않은

群馬縣知事(1938.1.19), 「上海派遣軍內陸軍慰安所ニ於ケル酌婦募集ニ關スル件」.

山形縣知事(1938.1.25), 「北支派遣軍慰安酌婦募集ニ關スル件」.

高知縣知事(1938.1.25), 「支那渡航婦女募集取締ニ關スル件」.

和歌山縣知事(1938.2.7), 「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ニ關スル件」.

茨城縣知事(1938.2.14), 「上海派遣軍內陸軍慰安所ニ於ケル酌婦募集ニ關スル件」.

宮城縣知事(1938.2.15), 「上海派遣軍內陸軍慰安所ニ於ケル酌婦募集ニ關スル件」.

內務省, 「醜業婦渡支ニ關スル經緯」.

일본열도 각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위안부' 모집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상기 6개 현에서는 군의 의뢰를 운운하는 모집업자들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 상기 일시에 내무성에 진상을 보고한 바 있다.

이상으로 보아 관서지역의 일부 부현에만 내무성을 통해 전달 및 협조요구가 있었으며, 나가사키 현에는 따로 외무성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일 전쟁 초기의 '위안부' 모집경로는 다양하며, 통일적인 전담 관장부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바로 이 때문에 앞에서 지적했듯이, 내무성은 1938년 2월 23일 '지나도항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경보국장 명의로 내보냈다. 육군성도 마찬가지로 1938년 3월 4일 육군성 부관이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북지방면군·중지파견군 참모장에게 보내게 된 것이다.

(2) 남지파견군 군위안소의 설치과정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모집이 일반화되고 동시에 국가기관의 체계적인 개입과 통제에 의해 입안·추진되어 간다는 사실은 1938년 11월의 남지파견군 위안소를 둘러싼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다.¹¹⁰⁾

1938년 11월 4일에 남지파견군 후루쇼(古莊) 부대, 즉 제21군의 참모 육군항공병 소좌 구몬 아리부미(久門有文)와 육군성 징모(徵募)과장으로부터 남지파견군 위안소 설치를 위한 '위안부' 400명의 도항 요구가 내무성에 전달되었다. 대만총독부에도 협조요구가 전달되어 이미 300명 정도를 도항시킬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다. 내무성은 소요인원 400명을 오사카, 교토, 효고, 후쿠오카, 야마구치의 5개 부현에 할당하여, 각 지방청에 지시하여 '은밀히' 적당한 '인솔자(포주)'를 선정하여 부녀자를 모집하여 현지에 보내도록 하였다. 인원의 할당을 통해 예상되는 잡음을 회피하고자 한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인솔자가 현지에서 군위안소를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수송경로는 일본 본토에서 대만의 기륭(基隆)까지는 인솔자의 비용으로 '은밀히 연행'하고 기륭에서는 어용선에 편승하여 현지에 보내며, 여의치 않으면 기륭·광둥 간의 정기편선에 태울 것을 지시하였다. 연락업무는 참모본부 제1부 제2과의 이마오카(今岡) 소좌, 요시다(吉田) 대위가 담당하고, 현지에서는 군사령부 미네모토(峯本) 소좌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위안부'는 후루쇼 부대가 남지파견군에 대한 것을 전부 통일해서 인솔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상기 5개 부현에 대한 지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솔자는 '대좌부(貸座敷)영업자' 중에서 신원이 확실하고 위안소를 경영하기에 적당한 인물로 선정하고, 어디까지나 '경영자의 자발적 희망'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항부녀자의 모집은 영업허가를 받은 주선인을 통해 은밀히 행하고, 희망 부녀자에게는 현지에서 추행(醜行)에 종사한다는 것을 설명해 두고, 주선료 등은 인솔자가 부담한다. 도항부녀자는 일본에서 창기 기타 사실상 추업을 하고 있는 자로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인솔자와 도항부녀자 간의 전차(前借) 계약은 단기간으로 하고 전차금은 소액으로 하며, 영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현지 군

110) 이 경과는 『자료집성』1의 아래 자료에 따라 구성하였다.

內務省警保局長・外事課長(1938.11.4), 「支那渡航婦女ニ關スル件伺」.

內務省警保局長(1938.11.8), 「南支方面渡航婦女ノ取扱ニ關スル件」.

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일본 본토 출항시 인솔자 이름, 도항부녀자 수, 출항지명, 예정월일, 기류 도착월일 등을 내무성에 통보하면, 이에 따라 대만에서의 선편을 수배하기로 계획되었다. 현지에서 군이 전염병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군의가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위안소의 설치 장소와 건물, 지휘감독은 군이 담당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타 부현에도 남지 방면의 부녀자 도항을 알렸다.

이상의 후루쇼 부대의 '위안부' 모집은 대규모의 것으로 육군성, 외무성, 내무성의 관련 중앙부서가 전체적인 지휘통제에 임하였음을 보여준다.

(3) 아마노 부대의 군위안소 개설과정

1939년 12월 아마노(天野)부대의 군위안소 개설과정은 앞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¹¹¹⁾ 한구 영사관에서는 아마노 부대의 '위안부' 모집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는 아마노 부대의 상급 군사령부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군사령부가 일본 본토로부터의 '위안부' 초치(招致)를 허가제로 하였으므로 아마노 부대가 독단적으로 원래 주둔지 가가와(香川) 현의 도움을 얻어 '위안부'를 불러들이고자 한 셈이다.

결국 군사령부에서는 영사관의 감독에 따른 취업을 의뢰하여 영사관이 허가하고, '위안부' 인솔자는 한구 도착 후 영사관에 출두하도록 내무성에 전달해 주도록 외무성에 요청하고 있다. 즉 영사관으로서는 사후 '추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위안소 개설을 둘러싼 연락체계가 현지에서 군부대간에도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았으며, 이는 특히 현지 부대가 사전연락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4) 대만혼성여단 보병 제1연대의 경우

앞서 언급한 외무성의 중국도항자의 통제방침은 실제 현지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1940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남지파견군 대만혼성여단 소속의 대만보병 제1연대, 즉 하야시(林)부대의 '위안부' 증원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이 그 정황을 말해준다.¹¹²⁾

먼저 사건 발생의 경위를 보면, 광둥성 흥현(欽縣)에서 하야시부대의 전속인 봉래(蓬萊)위안소를 운영하던 업자는 하야시부대를 따라 광서성 남녕(南寧) 부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작부 연행의 목적'으로 하야시부대의 증명서와 헌병대의 도항증명서, '위안부'초치증명서만 휴대하고 대만으로 향하게 된다. 외무성의 도항규칙에 따르면, 육해군의 증명서에 따라 가까운 영사관경찰서에서 도지사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광

111) 이 경과는 『자료집성』1의 아래 자료에 따라 구성하였다.

外務大臣(1939.12.22), 「漢口天野部隊慰安所婦女渡支ノ件」.

在漢口總領事(1939.12.27), 「漢口陸軍天野部隊慰安所婦女渡支ノ件一回答」.

112) 이 경과는 『자료집성』1의 아래 자료에 따라 구성하였다.

台灣總督府外事部長(1940.6.1), 「軍慰安所從事者ニ対スル身分証明書發給ノ件」.

台灣總督府外事部長(1940.9.2), 「渡支事由証明書等ノ取寄不能ト認メラルル対岸地域ヘノ渡航者ノ取扱ニ関スル件」.

高雄州知事(1940.8.23), 「渡支事由証明書等ノ取寄不能ト認メラルル対岸地域ヘノ渡航者ノ取扱ニ関スル件」.

台灣總督府外事部長(1940.9.2), 「渡支事由証明書等ノ取寄不能ト認メラルル対岸地域ヘノ渡航者ノ取扱ニ関スル件一回答」.

동 총영사관 발급의 도지사유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다.

업자의 신청을 받은 대만 고웅(高雄)주의 지사는 대만총독부에 문의를 하고, 총독부는 외무성에 도항허가 여부를 타진한다. 결국 외무성은 “이번 위안소 종업원의 도항은 시급을 요하므로 본 건에 한해서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만총독부의 생각은 보다 현실적이었다. 즉 영사관 경찰서와는 떨어져 있는 데다 영사관도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단시간에 도지사유증명서의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도지사유증명서의 발급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특수 영업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헌병대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도항시키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처리라고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이 실제로 훨씬 가깝다고 보인다.

(5) 미얀마의 군위안소

먼저 미얀마 지역에서의 일본군의 작전상황을 살펴보고 군‘위안부’ 수송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¹¹³⁾

1941년 11월 일본군은 남방으로의 침략을 위해 새로이 남방군을 편성하고 총사령관에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를 임명하였다. 1942년 1월 중순 제15군(飯田祥二郎 중장) 이하 제33사단·제55사단은 미얀마로 진격하여, 3월 상순 랭군을 점령했다. 이어 3월 4일 이후 제18사단(牟田口廉也 중장)과 제56사단(渡辺正夫 중장)의 2개 사단의 지원을 받아, 5월 중순에는 미얀마 전역을 수중에 넣었다.

1943년 3월 버마방면군(河辺正三 중장)이 제15군(牟田口廉也 중장) 제55사단을 기축으로 신설되었다. 1944년 3월 중순부터 7월초에 걸쳐 임팔 작전이 실시되고, 이 작전을 전후하여 1월에는 제28군이 4월에는 제33군이 새로 편성되었다. 주력은 제15·31·33사단을 거느린 제15군으로, 그 외에 제2·54·55사단을 거느린 제28군(櫻井省三 중장), 제18·56사단을 거느린 제33군(本多政材 중장), 그리고 방면군 직할인 제53사단과 독립혼성 제24여단, 기타 제5비행사단/제3항공군이 각각 투입되었다.

1945년 1월의 버마방면군(木村兵太郎 중장)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15·31·33·53사단으로 구성된 제15군(片村四八 중장), 제54·55·독립혼성제72여단으로 구성된 제28군(櫻井省三 중장), 제18·56사단을 거느린 제33군(本多政材 중장), 그리고 방면군 직할인 제2·49사단과 독립혼성 제24·105여단, 제5비행사단(田副登 중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얀마 점령이 완료된 1942년 5월 초순 일본의 주선업자들이 동남아시아의 점령지에서의 ‘위안 서비스’에 종사할 조선인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조선에 도착했다.¹¹⁴⁾ 이 주선업자들은 많은 금전적 이득, 가족의 부채를 없앨 수 있는 기회, 싱가포르에서의 새 생활 등을 미끼로 조선여성들을 모집했고, 모집된 여성들은 몇 백원의 전도금을 받았다. 대부분이 매춘 미경험자인 그녀들은 금액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을 근무하고 군대규칙에 구속시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연합군에 포로로 잡힌 위안소업자 기타무라 부부는 조선군 사령부의 제안을 받아

113) 森松俊夫(1991), 『圖說陸軍史』, 建帛社.

114) 앞의 자료, 「心理戰作戰班日本人捕虜尋問報告(Japanese Prisoner of War Information Report) 49號」(1944.10.1). 앞의 자료, 「調査報告書(Research Report) No. 120(1)」(1945.11.15).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응모하여 허가를 받았고, 같은 제안은 조선의 몇몇 업자들에게도 통보되었다. 기타무라는 22명의 조선여성을 300원에서 1000원의 전도금으로 매수했고, 여성들의 나이는 모집 당시 17세에서 29세였다. 조선군 사령부는 기타무라에게 모든 일본군 부대가 수송, 식량 지급, 의료 등의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서한을 주었다.

1942년 7월 10일, 기타무라 부부와 조선인 22명은, 다른 703명의 조선 여성과 90명 정도의 일본인 포주들과 함께 부산을 출항했다. 중간에 대만에 들러 싱가포르로 향하는 22명의 여성을 태웠고, 싱가포르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고 8월 20일 40일 만에 랭군에 도착했다.

랭군에서 일행은 각각 2, 30명의 그룹으로 나뉘진 다음, 미얀마 각지로 분산배치되었다. 각각의 그룹은 연대, 부대 또는 부대군에 소속되어 독립된 위안소를 구성했다. 기타무라 부부는 보병 제114연대에 배속되어, 부대를 따라 타운지, 메이치크라, 메이묘에서 몇 달을 보내고 난 뒤, 1943년 1월경 미치나에 도착해서 이후 그곳에서 계속 체재하였다. 미치나에는 이미 킨스이 위안소(조선인 20명), 모모야(중국인 21명) 위안소가 있었고, 기타무라의 위안소는 쿼에이라 불리웠다. 전선 지역에는 일본인 위안소는 없었다.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당시 조선군 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1941.7-1944), 제114연대장 마루야마 후사야스(丸山房安) 대좌와 그 직속상관인 남방군 총사령관 테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 1941.11 이후), 제15군 사령관 이다 쇼지로(飯田祥二郎, 1941.11-1943.3), 1941년 4월부터 1943년 3월까지 제18사단장이었으며 1943년 3월부터는 제15군 사령관이었던 무다구치 렌야(牟田口廉也, 1943.3-), 미얀마방면군 사령관 가와베 쇼조(河辺正三, 1943.3-1944.8)과 기무라 효타로(木村兵太郎, 1944.8-1945.8), 제18사단장 다나카 신이치(田中新一, 1943.3-)와 나카나가 다로(中永太郎, 1944.9-), 제33군 사령관 혼다 마사키(本多政材, 1944년 4월부터)의 쿼에이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짐을 인정할 수 있다.

(6) 오키나와의 경우

일본이나 조선, 대만 등지에서는 소상한 관련자료를 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오키나와(沖縄)에는 매우 자세한 자료가 남아 있다. 위안소 건축을 비롯하여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깊은 군의 관여가 군문서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송에 관련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다뤄본다.

1970년대 최초로 '위안부' 생존자로 주목을 끌었던 배봉기 할머니 일행 51명이 가고시마에서 탄 배는 5500톤급 정유수송선 마라이마루호였다.¹¹⁵⁾ 이들은 가고시마(鹿児島)를 1944년 11월 3일 오전 8시 출항하여 11월 7일 나하(那覇)에 내렸다. 이때 게라마(慶良間) 열도의 세 섬에 각 7명씩 21명, 나하에 약 20명, 요시무라라는 업자와 나머지 약 10명은 다이토(大東) 제도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똑같은 배로 오키나와에 왔던 것은 확인되지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이들이 배치된 라사섬 상황은 대동도 지대(支隊) 제4중대 진중일지에 잘 기록되어 있다.

1944년 11월 21일자 대동도 지대 제4중대 진중일지에 의하면 400명 정도가 주둔하

115) 그 당시 선박 특별간부후보생이었던 [게라마전기]의 저자 기도오 다모씨 증언

가와다 후미코(1992), 『빨간 기와집』, 매일경제신문사, 65쪽.

고 있던 라사섬(현 오키다이트지마)의 대동도 지대 제4중대에게도 대동수비대에서 전보로 이미 '위안부' 도착에 대한 정보와 위안소 규정도 함께 보내고 있다.

11월 23일에는 군함 5척의 호위 하에 '위안부'(경영자 합하여 모두 8명)가 도착하였다. 주목할 것은 조선여성들을 위안부로 연행해 온 그 배로 라사섬 주민들을 퇴도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 민간인들은 연합군 공격의 위협 때문에 피신시키면서 같은 민간인인 조선여성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에 끌려 왔다. 이것은 군위안부들이 일본군의 필요에 의해 위험지역을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는 구체적 예이다.

그리고 1944년 12월 3일자 수비대 제4중대 진중일지에는 연행된 여성과 경영자에 관한 조사 및 위안소 운영방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조선인 군위안부 명단이 소속부대가 명기된 채로 발견된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이때 위안소 경영책임자는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県 宗像郡)에 주소를 두고 있던 우라베 히로시(占部 公)였다. 6명의 위안부는 대부분 조선의 남부 경상도 출신자들이었다. 19세 2명, 21세 2명, 25세 2명이었다. 위안소 영업은 "11월 26일부터 서해안 부락 북단 빈집에 영업을 개시한다. 규정은 귀대의 것에 따른다"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대동도 수비대 제4중대는 위안부에 대한 식량공급과 공습시 동굴에 위안소를 설치하는 일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여하고 있었다. 이것이 최소한 일본군이 배치된 많은 섬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소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때 라사섬 위안소 운영의 지휘 책임계통은 대동도 지대 제4중대장 육군중위 모리타 요시오(森田芳雄)—보병 제36연대장 겸 대동도 수비대장 히라노(平野) 대좌—제32군(사령관 우시지마牛島満 중장)이었다.

4. 도항 중의 군'위안부'의 노예적 상태와 이들에 대한 범죄

도항과정 중에도 피해여성들은 비인간적 처우를 받았다. 1938년 한구위안소에서는 상해, 남경 등에서 양자강 도강시 '위안부'를 수송순위 1위인 군수품으로 우선 수송했다는 군관계자의 증언이 있고, 피해자들 또한 자신들이 군수품과 함께 도항했던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다.¹¹⁶⁾ 그 외에도 도항과정에서 강간을 비롯한 폭력은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부터 군'위안부'의 수송은 일본정부와 군부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하에 이루어졌음은 물론 민간업자에 의한 동원의 경우에도 현지의 군위안소로 파견되는 '위안부'의 숫자와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위안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일본정부와 군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위안부'들의 수송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추방(deport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정부와 군의 정책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수행되었음이 명백하고 국가 스스로가 국제법이 금지하는 노예매매와 부녀인신매매에 관여함으로써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조선인'위안부'들은 도항과정에서도 물건처럼 취급되어 노예도 못되는 군수품과 소모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아래 제2부에서 검토되는 바와 같이 '위안부'의 도항과 관련하여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명시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추방행위에 참가한 법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국제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고인들(이름 특정)은 군인 또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혹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사

116) 신영숙·조혜란, 237-8도항 중의 범죄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 정리

실상의 국가기관으로서 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된 다수의 조선여성들을 아시아·태평양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이 설치한 군'위안소'에 수송하는데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위안부' 수송체제를 입안, 실시하여 이들을 군'위안소'에 감금함으로써 뒤에 별도로 기소된 바와 같이 성폭행, 강간, 고문, 감금,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상해, 살인 등의 범죄행위의 피해를 입게 하여 '성노예'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국제법상 강제추방에 해당하며 따라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헌장 제2조 1항에 적시된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IV. 군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1. 군위안소의 체제

(1) 부대의 운용과 군위안소의 관련성

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각지에 증설된 군위안소는 일정한 체계를 지니게 나갔다. 이런 군위안소의 체제는 무엇보다도 군대 내에서의 위상과 관련시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군위안소는 일본군의 작전 내지 기구의 일부로서 존재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군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은 각 단위부대의 주둔규정을 비롯한 각종 부대 운용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그 주체는 엄연히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군이었다. 따라서 업자와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그 수동적인 구성원,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중일전쟁기를 보자. 중국 상주(常州)에 주둔하던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는 1938년 3월 16일자로 「상주주둔간내무규정」을 정했는데, 그 제9장에 「위안소사용규정」이 들어 있다.¹¹⁷⁾ 독립산포병 제3연대의 경우, 1939년 4월 23일자 진중일지에 「특종위안업무에 관한 규정」의 언급이 있는데,¹¹⁸⁾ 이후 1941년 4월 9일에는 「특수위안업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117)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1938.3.16), 「常州駐屯間內務規定」, 『자료집성』2. 목차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제1장 총칙
- 제2장 일과시간, 기거 및 용의
- 제3장 제근무(장교근무, 하사관근무, 위병근무, 당번근무)
- 제4장 화재예방, 소방, 비상소집
- 제5장 명령하달 및 회보
- 제6장 연락
- 제7장 우편물
- 제8장 휴일 및 외출 출장
- 제9장 위안소사용규정
- 제10장 군기(軍機) 보호 및 방첩
- 제11장 중국인의 취급
- 제12장 취사 및 목욕
- 제13장 위생

118) 1939.1.7/4.23, 「獨立山砲兵第三連隊陣中日誌」, 『자료집성』2.

는 기록이 남아 있다.¹¹⁹⁾

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에도 마찬가지였다. 필리핀을 점령했던 제14군의 경우, 「병참근무에 관한 규정」(42.11.17)에서, 병참지 근무를 담당하는 부대장은 군의 인가를 받아 위안소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안소의 취체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정할 것, 위안소 요금은 군의 인가를 얻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¹²⁰⁾

버마 전선의 경우, 만달레이 부근에 주둔했던 제5야전수송사령부 사령관은 만달레이 주둔지 사령관을 겸하고 있었던 바, 1943년 10월 20일자 「만달레이 주둔지업무규정」에 의하면 위안소에 관해서는 「주둔지위안소규정」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으며,¹²¹⁾ 이 「주둔지위안소규정」은 동년 5월 26일자로 제정되었다.¹²²⁾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5야전수송사령부 주둔지업무규정」(43.11.3)은 일과 시한, 위안소의 설치 및 그 사용일 할당 등은 필요시마다 사령관이 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하야시(林)집단방위규정」(42.11.28)과 제15군의 규정을 참조한다고 되어 있다.¹²³⁾ 이 체제는 그대로 지속되어 1945년 1월 2일자 「만달레이 주둔지근무규정」에 따르면, 위안소 이용자는 「주둔지위안소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²⁴⁾

중국 전선의 제23군 예하의 한 부대는 1944년 「외출 및 군인구락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외출과 군위안소 설치·운영 및 이용방법을 정하고 있다.¹²⁵⁾ 그리고 이 규정 외에는 「군대내무령 중산(中山)주류규정」 및 「중산경비대 군인구락부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특히 영업주에 관한 규정은 「중산경비대 군인구락부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당연히 상급부대인 중산경비대의 「군인구락부 이용규정」(44.5)은 앞서의 「외출 및 군인구락부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¹²⁶⁾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단위 부대의 군위안소는 주둔규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설치·운영·이용되었다. 그리고 군 작전과 결부되어 책정되는 각각의 주둔규정은 상급부대의 제 규정과 연관되어 있었다. 바꿔 말하면 군위안소의 설치·운영·이용은 철저하게 일본 군의 명령체계에 입각해서 이루어졌고, 필수적인 군의 작전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위안소는 군대기구이자 군사시설이었다.

(2) 군위안소의 특성

운영 내지 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군위안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군위안소는 극히 드문 예¹²⁷⁾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공창제도 하에서의 유곽과는 별도의

119) 1941.4.9, 「独立山砲兵第三連隊陣中日誌」, 『자료집성』2.

120) 第14軍司令官(42.11.17), 「兵站勤務ニ関スル規定ノ件達」, 『자료집성』3.

121) 第5野戦輸送司令部(1943.10.3), 「第五野戦輸送司令部駐屯地業務規定」, 『자료집성』4.

122) マンダレー駐屯地司令部(1943.5.26), 「駐屯地慰安所規定」, 『자료집성』4.

123) 第5野戦輸送司令部(1943.11.3), 「マンダレー駐屯地業務規定」, 『자료집성』4. 하야시(林)집단은 제15군을 가리킨다. 『자료집성』에서는 10월 3일로 되어 있지만, 11월 3일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했다.

124) 第5野戦輸送司令部(1945.1.2), 「マンダレー駐屯地勤務規定」, 『자료집성』4.

125) 直兵团遠山隊(1944), 「外出及軍人俱樂部ニ関スル規定」, 『자료집성』3.

126) 中山警備隊(1944.5), 「軍人俱樂部利用規定」, 『자료집성』3.

127) 1940년 한구(漢口), 남창(南昌) 지역에 창구(娼區)가 설정되고, 기존의 창기취체(娼妓取締)규칙이 적용되고 영업세 납부도 공창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으로 군인들의 '위안'을 돕는 기관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 가운데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呂集

체제로 군인들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따라서 군위안소는 대부분의 경우 군인·군속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인들은 규칙상으로는 군위안소 외의 다른 위안소를 이용할 수 없었다. 셋째, 군‘위안부’는 군이 지정한 의사, 대부분 군의에게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았다. 넷째, ‘위안부’의 이동을 포함한 위안소의 제반 상황은 군의 엄격한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

먼저 ‘위안소’의 명칭은 설치된 지역과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의 자료에 따르면, ‘군위안소’, ‘군인구락부’, ‘군인오락소’, ‘후방시설’ 등이 있고, 증언자료에서는 중국 한구(漢口)에서 ‘한구특수위’라고 위안소 입구에 간판이 있었던 경우를 비롯하여 ‘공동변소’, ‘공중변소’ 또는 ‘바이순야도(賣春宿)’, ‘피야’(比-屋), 청루(靑樓), 판판야(판판屋) 등으로 불렸다.¹²⁸⁾

위안소의 유형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군이 직접 설치·경영한 경우, 일본군의 감독과 통제 아래 민간인이 관리·운영하는 군인과 군속 전용의 위안소, 그리고 군대가 민간의 매춘시설을 일정한 기간 군대용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는 위안소가 그것이다.¹²⁹⁾

먼저 일본군이 직접 설치·경영한 위안소를 살펴보면, “육해군에 전속하는 주보(酒保) 및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경영·감독·취체(取締)한다”는 식이다.¹³⁰⁾ 또한 “위안소는 소관 경비대장 및 헌병대의 감독하에 경비지구 내 장교 이하를 위해 개업했다”¹³¹⁾거나, “작전지구의 위안소는 군에 의해 개설되었고 또 감독되었”¹³²⁾으며, “좌기(左記) 장교(항공지구 사령관)가 위안소 감독의 임무를 맡고 제98비행장대대가 그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¹³³⁾고 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육해군이 직접 경영하는 위안소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위안소 건물의 건축과 시설 문제 등도 군인들이 직접 담당하였고¹³⁴⁾ 이러한

團特務部(1940.4), 『呂集團特務月報』, 『자료집성』2.

128) 신영숙·조혜란, 244.

129) 吉見, 27-28; 강만길, 27-28. 맥두걸보고서, 부록, para. 8은 일본정부와 비정부단체의 예비조사에 근거하여 (1) 일본군부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는 곳, (2) 형식상으로 민간업자가 관리하지만 사실상 군부의 통제아래에 있고 군인과 군속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곳, 그리고 (3) 군에 우선권이 주어졌으나 일본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 3가지 범주의 위안소를 언급하고 두 번째 범주의 위안소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한다. The First Report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Centre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Japan's War Responsibility, 31 March 1994, pp. 3-4. 신영숙·조혜란은 시기와 목적에 따라 (1) “군이 입안, 군대 안에 설치하여 관리, 통제뿐 아니라 직영하는 군직영(직할)위안소 (2) 군이 관리, 통제는 하되 민간업자에게 영업을 맡기고 군인 외 일반인 사용을 금지하는 군 전용위안소 (3) 일반인 사용의 민간업소를 군이 지정, 군이용을 위탁, 편의를 제공하는 위안소”로 구분한다.

130) 앞의 자료, 『外務省警察史 在南京總領事館』, 『자료집성』1.

131) 波集團司令部(1939.4), 『慰安所ノ狀況』, 『자료집성』2.

132) 『南西太平洋地域ATIS尋問報告』, 吉見義明編(1992),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477쪽. 이하 吉見(1992)로 약칭.

133) 『日本軍隊における生活利便施設(ATIS尋問報告 第120號)』, 앞의 책, 吉見(1992), 522쪽.

134) “마쓰오(松尾) 일등병 위안소 설치 사역병(使投兵)으로 7시 대대본부에 갔다가 18시 이상 없이 귀대함”. 眞志喜警備中隊, 『陳中日誌』(1944.11~12), 앞의 책, 吉見(1992), 394쪽. “하시모토(橋元) 오장

군대 직영의 위안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군이 차지하였다.¹³⁵⁾ 이러한 형태로는 현재까지 1938년 상해 양가택(楊家宅)의 병참사령부가 개설한 것이 최초의 육군 직영 대규모 위안소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위안소에 관하여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맡겼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군의 감독과 통제가 행사되었다. 위안소의 설치 장소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물론, 종업원과 '위안부'의 인적 변동상황에 대해서도 일일이 그 지역 병참 담임장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고, 위안소 경영자가 경영 곤란을 당한 경우 역시 그 지역 병참 담임장교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그 업자는 군 당국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¹³⁶⁾ 이런 경우 위안소 이용자는 물론 군 인과 군속에 한정되어 있었다.

중국의 후방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군위안소는 대체로 부대 가까운 곳에 군전용 위안소를 설치하여 민간인 경영자를 주인으로 두고 군이 관리,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한구(漢口)의 적경리, 동산리 위안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위안소가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도 당시 일본군은 그 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시설을 차려주고, 운영시간과 이용요금을 정하며,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과 같은 문제에 관한 위안소 규칙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군의 통제가 인정된다.

세 번째 유형의 위안소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민간의 기존 매춘업소에 군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민간업소의 출입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군은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유곽에 군의 이용을 지정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에는 일반 유곽이지만 군 이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인 출입통제가 따르게 됨으로써 두 번째 군전용 위안소로 전환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위안소의 구체적 형태와 규모

위안소의 형태는 군부대가 신축했거나 또는 현지 가옥을 개축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대가 이동 중이거나 전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개 특별한 장소가 없이 천막, 트럭, 혹은 초소가 위안소로 전용되어 사용되었다. '후방 시설'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소의 형태는 해당 부대의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로 위안소를 신축하는 경우, 엄연히 군의 업무의 일환으로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1944년 오키나와에서는 먼저 담당장교가 지정되고, "소요자료로는 건축중의 병사용 재료를 일시 전용하고 그 외에는 부관에게 연락할 것"을 명한 이래, 위안소 건축부지의 정비, "천막 및 돛자리로써 칸막이, 취사장, 변소설비 전부 완료" 등의 진척현황을 소요인원이나 노동시간과 함께 매일 일지에 상세히 지시하고 있으며,¹³⁷⁾ 개축

(伍長) 이하 87명은 위안소 건축부지 정비에 종사함. 부지의 적토(積土) 및 매립 부지로 도로 100미터 보수". 琴乘洞 編·解説, 『戰場日誌에서 보는 從軍慰安婦極秘資料集』, 綠陰書房, 1992, 270쪽.

135) 『日本軍隊における生活利便施設(ATIS尋問報告)』(1943), 앞의 책, 吉見(1992), 475쪽.

136) 앞의 책, 吉見(1992), 498-499쪽.

137) 1944.5.6, 「要塞建築勤務第六中隊陣中日誌」, 『자료집성』3.

또한 군부대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다.¹³⁸⁾ 이는 위안소 준비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군이 관리,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대와 위안소와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다. '위안부' 피해자 29명 가운데 다섯 사람이 부대 안의 장소, 그 외는 부대 바로 근처 혹은 마을과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위안소에 있었다 한다. 따라서 각 부대들은 편의에 따라 각자의 경비지역이나 군 진지 안의 병사(兵舍) 등 관할 지역 안에서 설치장소를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³⁹⁾

위안소의 규모는 최소 5, 6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다양했다. 중국 한구의 적경리 '위안소'는 1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위안소' 각각의 건물이 1938년에는 30개소, 1942년경에는 20개소가 있었다고 하며, 민가를 개조한 오키나와에는 6, 7명의 '위안부'가 있거나, 또는 2,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군막사가 마련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경험으로는 그들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후로 별도의 군막사 건물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현지 가옥 즉 민가나 여관, 유곽 등 방이 많은 집이나, 또는 원래의 일반 남성용 '위안소'를 군 '위안소'로 용도를 바꿔 사용한 경우들이 있다. 이외에도 군은 주둔지 촌장에게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¹⁴⁰⁾

군막사용으로 신축된 경우, 대개 방은 널빤지로 칸을 막은 5, 6개의 좁은 방으로 되어 있으며, 문은 담요 등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군이 접수한 현지에서 가옥들은 베니어판 등으로 개량되어, 방의 크기가 약 2인치 4정도, 다다미 네 장 반, 혹은 두 장 반, 또는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의 크기로 개조되었다. 또 위안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건물에는 그 표시를 해놓았으며, 문에는 요금액이 붙어 있고 위안소 계산대 뒤에는 '위안부'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위안소는 대개 장교용, 일반병사와 하사관용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군부대에 전속 '위안부'가 없이 이동중일 때는 부근 군위안소에서, 또는 다른 이동부대와 순회중인 '위안부'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조선여성은 사병용이고, 일본여성은 장교용이었다는 일본군인의 증언도 있으나, 실제로 조선인 피해자들 대다수가 장교, 병사할 것 없이 상대를 해야 했다고 한다.¹⁴¹⁾

3. 위안소의 이용과 관리

(1) 위안소 규정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주사변 육군위생사』에는 1932년 4월 1일자로 「군오락장 취체규칙」이 실려 있다.¹⁴²⁾ 그 내용은 설비와 업자의 통제, 이용규칙, 위생검사 등의 모든 측

138) 1944.12.24~31, 「要塞建築勤務第六中隊北飛行場五六飛大派遣, 重信班陣中日誌」, 『자료집성』3.

139) 신영숙·조혜란, 244이하.

140) 앞의 책, 센다 가코오, 위의 책, 111쪽.

141) 신영숙·조혜란, 248-9쪽.

142) 陸軍省『滿州事變陸軍衛生史』第6卷(1937年). 秦郁彦(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社, 64쪽. 아래의 「군오락장 취체규칙」의 내용은 앞의 책, 411~414쪽에서 재인용.

· 군오락장의 영업가옥은 군이 지정하고, 설비와 손해는 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업자의 퇴거나 영업의 폐지·휴업은 군의 허가 사항이며, 수비구역 내의 유사한 영업을 금지하고,

면에서 중일전쟁 이후 본격화하는 군위안소의 효시가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위안소의 기본적인 틀은 이미 만주사변의 초기단계에서 거의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패전 전까지의 군자료에는 '위안소' 규정이 각 '위안소'를 설치한 부대별로 작성되어 있다. 이것은 별도의 규정집으로 발행되거나, 혹은 각 군의 매일회보, 진중일지 등에 게재되었다. 작성 경위와 작성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군 작전과 관련되는 부대운용의 일환으로 위안소가 군의 부속시설로서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성자가 군부대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 확인가능한 위안소 규정의 내용을 보면, 부대의 규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부대별 규정내용에는 어디에서건 군 상부가 의도한 위안소 설립의 목적 즉 성병대책, 군기강 확립, 방첩의 지시 등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단지 위안소 이용시간, 요금체계, 업자에 대한 통제방식, 위안소 내 위생대책 등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위안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교 이하 각 계급별 또는 소속 부대별로 위안소 이용일과 시간, 요금을 정하고 있다. 위안소 내 준수사항으로서는 콘돔 착용의 의무화, 음주와 '위안부' 구타 금지, '위안부'와의 키스금지, '위안부'를 공유(共有) 개념으로 대할 것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번호표를 받아 순서를 지키고, 외출증을 휴대하며, 2인 이상의 동행과 복장 상태(대검이나 각반의 착용) 등에 대해서도 지시하고 있다.

특히 이용시간과 요금은 장교 이하 계급별로도 달랐다. 이용시간은 대개 병사는 평일 오전 9시 또는 10시경에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그 이후 9시 혹은 10시까지가 하사, 그리고 그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가 장교로 되어 있다. 또는 장교의 출입구를 다르게 표시한 지역도 있는가 하면, 병사들의 위안소 출입은 허가와 더불어 담당자의 인솔외출 등이 명시되고 있다. 장교는 앞서도 말했듯 장교전용위안소가 별도로 있는 지역도 있었으나, 그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위안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불되는 요금은 일본이나 점령지의 화폐 혹은 계급별로 색깔이 다른 군표를, 또는 금액에는 세금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거나, 특별매전세면세표(特別賣錢稅免稅標)로 '위안'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인·조선인·현지인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었

매월 1회 헌병이 정해 정기휴일을 실시한다.

- 이용은 육군 군인과 군속에 한정한다.
- 영업의 개시 및 접객부의 이동은 관할 헌병대에서 관리하며, 접객부의 성명, 국적 본적, 예명, 생년월일과 경력을 기재한 접객부명부와 사진을 제출한다.
- 접객부는 헌병의 입회 하에 적어도 매주 1회 군의의 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부(健康簿)를 비치하여 제시해야 한다.
- 검진 불합격자의 치료와 화류병 예방약품의 구비는 업자가 부담한다.
- 영업시간은 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야간은 하사관만이 이용한다.
- 유흥료(遊興料)는 1시간당, 일본인 1엔 50센, 조선인과 중국인 1엔이다.
- 접객부는 지정한 지역 외에 출입을 금하며, 접객부에게 이익 배분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 화류병 예방지침으로 콘돔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전혀 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위안부'에게는 친절하고 명랑하게 군인을 대하라고 요구하였다. 위안소 바깥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성병감염 검진을 받는 날이 유일한 외출일이었다.

특히 성병예방대책은 '위안부' 여성 위주로 실시되어, 성교전 뒷물이나 사후 세척 등 세세한 사항을 정해주며, 또한 전담 군의와 성병검사 실시일 등을 지정해주고 있다. '위안부'가 군인에 의해 전염될 경우 전염자의 방마다 표시를 하고, 매일 회보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군인의 접근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관리자에게는 위안소의 개·보수, 위생시설완비와 청결유지, 매일 '위안부'별로 받은 요금을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간관리자와 '위안부'와의 매상고 할당율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은 대개 소속 군부대를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

(2) 사용자와 관리자

군문서에 '사용자'로, 또는 피해자들이 '손님'으로 부른 군위안소를 이용한 남성들은 군인남성이 원칙이었다. 피해자들의 경험으로는 오직 군인만을 상대한 사람도 있는 반면, 군속, 또는 군인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인 남성이 오는 것을 허용한 위안소도 있었다고 하며, 피해자 김학순은 이런 민간인 남성의 도움으로 위안소를 탈출한 사례이다.¹⁴³⁾

또한 위안소에는 군자료상 '업주'로, 또는 '위안부' 출신들이 '주인'으로 말하는 관리자가 있었다. 이들은 사용자들의 사용료를 받거나, 또는 위안소 위생을 관리했다. 특히 이런 대가로 군에서는 민간관리자들에게 '위안부'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소위 요금에서 일정 배당액을 책정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별도의 취사담당자가 '위안부'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곳도, 또는 주선업자들이 있어, '위안부'들이 위안소에 오는 일을 담당할 경우도 있다. 군은 민간관리자로 특히 제대군인을 선호하였으며, 민간관리자로는 큰 규모의 위안소에는 일본인들이 그리고 소규모나 전방에는 조선인 민간관리자가 많았다고 한다. 증언집의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는 9사례가 군인 또는 군속이 경영했고, 그 외 21사례는 일반인 일본남녀, 혹은 조선남녀였다.¹⁴⁴⁾

(3) 감독·단속

군위안소의 감독과 단속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는가도 장소와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민간인이 이용하는 유곽은 현지 영사관(영사경찰)이 통제했지만, 육해군에 전속된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영사관이 끼여들 여지는 없었다.¹⁴⁵⁾ 단지 도항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초 위안부 및 업자의 도항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 외무성의 권한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또 해당 군부대의 경우에는 주둔지 경비대장과 헌병대가 직접 위안소의 감독·단속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다.

중국의 한구 적경리 위안소의 경우, 한구병참사령부 산하에 위안소를 통제·감독하

143) 신영숙·조혜란, 248-9쪽.

144) 신영숙·조혜란, 248이하.

145) 앞의 자료, 「外務省警察史 在南京總領事館」, 『자료집성』1.

는 '위안계(慰安係)'가 있어, 책임 장교와 하사관, 사병이 근무하고 있었고, 위안소 입구 초소에는 한구경비대의 순찰병력이 파견되어 근무하였다.¹⁴⁶⁾ 피해사례에서도 관리자가 민간인이거나 군인이거나에 상관없이 전체 책임은 관할 군부대가 맡았다.

한편 동남아 지역의 경우, 현지 공관이 없는 외무성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초기에는 점령지에 주둔하는 병참부대나 현지부대가 위안소를 설치하고 감독했지만, 군정이 실시되면서 위안소에 대한 통제는 점차 현지 군정기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버마에서는 위안소의 군기숙정은 순찰장교, 주둔지사령부 오락계의 장교나 하사관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¹⁴⁷⁾

감독·단속은 각 위안소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하지만 감독과 단속도 어디까지나 위안소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존속을 위한 것이지 '위안부'의 보호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가령 이용군인이 규정을 어기면, 특별한 문제, 예컨대 위안소 내 기물 파괴, 또는 군인의 칼부림, 구타 등으로 인한 '위안부'의 심각한 상처나 죽음 등을 제외하고는 훈방되고 있으며, 성병에 감염된 여성은 완치될 때까지 군의로부터 관리를 받고 다시 '위안부' 노릇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교가 성병에 감염되자 해당 위안소를 영업정지를 시킨 예도 있다. 또 헬마헤라 섬에서는 콘돔이 없자 장교들이 여성들과 상의하여, 콘돔 없이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¹⁴⁸⁾

이에 비해 '위안부'의 영업조건은 군에 의해서 규제되고, 규칙은 엄격히 실시되었다. 앞의 적령리 위안소의 경우를 보면,¹⁴⁹⁾ '위안부'들은 본인의 사진, 호적등본, 서약서, 부모의 승락서, 경찰의 허가서, 시정촌장의 신분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전력, 부형의 주소, 직업, 가족 구성, 전차의 금액 등을 기입한 신상조서(身上調書)를 작성했다. 이 신상조서에는 이후 상벌, 병력(病歷), 특징들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고, 사본이 헌병대에 보내졌다. 또한 군은 민간관리자들간의 조합 결성을 지시하여, 감독·단속하기도 했다. 이들의 조합사무소는 별도로 설치했으며, 여기에서 '위안부'의 증감, 수입과 지출의 장부기재, 이용인원, 매상고 등을 파악하여 매일 위안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주로 일본군 문서와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군위안소 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만주사변 이후 일본군 점령지에 설립되기 시작한 일본군위안소는 1937년 말에 질적인 전환을 맞아 패전시까지 지속되었다. 점령지의 확대와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위안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대규모 부대 및 육군성이 직접 나서서 체계적으로 군위안소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것은 파견군 수준에서의 지시로부터 육군성의 직접 지시로, 나아가서 육군성의 총체적 기획으로까지 그 체계화의 수준이 높아갔다. 일본군과 육군성 외에도 외무성, 내무성 등 타 정부기관 및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등이 군위안소 정책의 수행에 협력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안소의 설치, 운영하는데 관여함으로써 다수의 조선인 군'위안부'에 대하여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강간을 비롯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146) 앞의 책, 山田清吉, 『武漢兵站』, 60, 77쪽.

147) 앞의 자료, マンダレー駐屯地司令部, 「駐屯地慰安所規定」, 『자료집성』4.

148) 신영숙·조혜란, 248이하.

149) 앞의 책, 山田清吉, 『武漢兵站』, 79, 82, 86쪽.

V.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

1. 조직적, 지속적 강간

아래에서는 일본이 이러한 강간수용소를 국가의 통제와 감독 아래 직접 유지하였음과 일본군 위안소에서 제공된 이른바 '위안'행위는 '위안부'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에 다름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강간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1) 강간의 성격

일본군 '위안부' 체제는 흔히 메이지 시대의 공창제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곤 하였다. 메이지 전체주의 국가 하에서 제도화된 일본의 공창제도가 전시체제 하에서 확장된 군국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¹⁵⁰⁾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 강점하의 조선 여성에게 행해진 범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선여성에 대한 연행은 사기와 협박, 납치를 동반한 강제연행이었다. 그것도 10여 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강점기의 조선인은 어떠한 집단적 저항도 거부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강점한 조선에 대한 완전 지배라는 사회조건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공창제의 연장이라는 설명은 일본의 천황제라는 일본 '내부'의 사회성격만을 문제 삼지, 식민지라는 사회조건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공창제 모델은 조선인 '군위안부'의 존재조건에서 조선에 대한 통치정책을 사상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공창제도라는 설명에 따르면, 그 범죄가 주로 '위안부'라는 '제도'에 치우치게 되며 그 위안소 안에서 일어난 하나 하나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게 된다. 이 결과 '군위안부'가 당한 폭력과 각종 괴로움은 '제도'의 결과로만 치부될 뿐, 그것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게 된다. '위안부'가 위안소에서 당한 범죄의 핵심은 하나 하나의 성폭력에 놓여 있다.

셋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된 조선여성은 유곽과 전혀 관련이 없고 성경험이 없는 미혼녀들이 대다수이다. 이 점은 취업사기의 외양을 띤 강제연행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점은 일본에서 모집된 '군위안부'와도 차별성을 보여준다.

넷째, 매춘제도는 성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성관계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위안부' 경험으로 인하여 돈이나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군표를 놓고 간 경우에도 위안소 경영자가 관리하였고 전후에 그 군표는 화폐로 환산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들 여성이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식민지시(視)된 조선인이었으므로 전후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들이 겪

150) 시즈끼 유키오,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 여성" 정신대 문제 자료집, 1, 1993? pp. 13-15; Yuko Suzuki, "The Social Milieu That Conceived the 'Comfort Women' System: Legalized Prostitution, Patriarchy, and Emperor System," presented at ICJ seminar, Tokyo, 1995 참조.